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Korea against Piracy in Gulf of Guinea



지도교수 홍성화

2020년 8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해양군사학과

김종은

본 논문을 김종은의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이 창 희 (인)

위원 박 성 호 (인)

위원 홍 성 화 (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목 차

표 목차	III
그림 목차	IV
국문 초록	V
영문 초록	V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해적행위의 정의 및 발생현황	6
제1절 해적행위의 정의	6
I. 국제법적 및 국제기구상 정의	6
II. 국내법상 정의	9
제2절 해적행위의 발생현황	10
I. 연도별 발생현황	10
II. 지역별 발생현황	11
III. 해적 공격유형	15
IV. 인명 피해현황	16
V. 주요 피해선박	17
제3장 소말리아 해적과 해적퇴치를 위한 노력	18
제1절 소말리아 개요 및 해적행위의 발생배경	18
I. 소말리아 개요	18
II. 해적행위의 발생배경	19
제2절 해적조직의 구성 및 해적행위의 특징	23
I. 해적조직의 구성	23
II. 해적행위의 특징	25

제3절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노력	29
I.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9
II.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40
제4장 기니만 해적과 해적퇴치를 위한 노력	43
제1절 기니만 개요 및 해적행위의 발생배경	43
I. 기니만 개요	43
II. 해적행위의 발생배경	46
제2절 해적조직의 구성 및 해적행위의 특징	56
I. 해적조직의 구성	56
II. 해적행위의 특징	57
제3절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노력	59
I.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59
II.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63
제5장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65
제1절 국내기업의 지역상생을 위한 기니만 지역 투자 활성화	67
제2절 국제사회 노력 적극 동참	68
제3절 해상안보체계 구축 지원	69
제6장 결 론	77
참고문헌	80

<표 목차>

<표-1> 최근 10년간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현황	10
<표-2> 최근 10년간 지역별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현황	11
<표-3> 최근 10년간 소말리아해역 해적사고 발생현황	12
<표-4> 최근 10년간 서 아프리카해역 해적사고 발생현황	13
<표-5> 최근 10년간 동남아시아해역 해적사고 발생현황	14
<표-6> 최근 10년간 해적공격 유형	15
<표-7> 최근 10년간 인명피해현황	16
<표-8> 최근 10년간 주요 해적 피해선박 종류	17
<표-9> 푼틀랜드 정부와 해적 수입 비교	21
<표-10> 씨족 구성에 따른 소말리아 해적조직 구성	22
<표-11> 소말리아 해적 세력구성	24
<표-12> 소말리아 관련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 현황	30
<표-13> 연합해군사 조직도	38
<표-14> 청해부대 주요활동	42
<표-15> 기니만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및 GDP 중 차지비율	44
<표-16> 기니만 연안국가 대외무상원조실적	64
<표-17> 소말리아와 기니만 해적행위 비교 요약	65
<표-18> 군수품 양도 현황	71
<표-19> 기니만 연안국가 해군과 해양경찰	72
<표-20>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75

<그림 목차>

[그림-1] 소말리아의 위치	19
[그림-2] 아덴만의 지리적 특징	22
[그림-3]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지역	23
[그림-4] 연도별 소말리아 해적활동해역 확장 현황	27
[그림-5] 기니만의 위치	43
[그림-6] 바카시 반도 위치	47
[그림-7] 니제르 델타 위치	50
[그림-8] 서아프리카 국가 전체 어획량 중 IUU 비중	55
[그림-9] 2019년 기니만 해적사고 발생 현황	58
[그림-10] 기니만 해양구역 구분	61
[그림-11] 주요 해상교통로와 해적행위 및 해상강도 발생해역(2006~2013) ·	66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 종 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해양군사학과

초 록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해외로부터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하여 다른 물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수출입국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무역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이러한 해상운송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종래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해양안보위협에 더하여, 해상테러리즘,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 등과 같은 비 전통적인 해양안보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는 자유로운 해양사용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기니만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를 퇴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논문의 구성으로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해적행위의 국제법적 및 국내법적 정의를 연구하고, 전 세계 해적행위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해적행위의 심각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소말리아와 기니만 해적과 해적퇴치를 위한 노력

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소말리아와 기니만에서 해적이 창궐할 수 밖에 없는 원인과 소말리아와 기니만 해역 해적조직의 구성과 해적행위의 특징을 연구하고, 해적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현재 취하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4장까지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니만 해적행위와 소말리아 해적행위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총 3가지의 역할을 도출하였는데 첫째, 민간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지역상생을 위한 기니만 지역 투자 활성화이다. 둘째, 정부 측면에서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셋째, 군사적 측면에서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상안보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가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활동이 소말리아 해역에 비해 소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근 창궐중인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검토하여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A Study on the Role of Korea against Piracy in Gulf of Guinea

Kim, Jongeun

*Department of Naval Study
Graduate School of Maritime Industries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Korea is geographically surrounded by three sides of the sea, and is an import and export country that imports raw materials and energy from overseas, processes them, and exports them.

Today, maritime transport faces the threats of non-traditional maritime security, such as maritime terrorism, piracy and maritime armed strength, in addition to traditional maritime security threats such as conventional military threats.

In particular, piracy and maritime robbery are among the greatest threats to free marine u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a possible role of Korea in combating piracy in the Gulf of Guinea area through a review of the recent surge in the Gulf of Guinea area.

This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Chapter 1 Introduction suggeste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study. In Chapter 2, research o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al definitions of piracy was conducted. In addition, the seriousness of piracy was considered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piracy. Chapters 3 and 4 reviewed the pirate activities and efforts to combat pirates in Somalia and Guinea. In particular, the causes of the rise of pirates in Somalia and Gulf of Guinea, the formation of pirate organizations in Somalia and Gulf of Guin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piracy, and the activities currently being conducted by the Korean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to combat piracy were reviewed. In Chapter 5, based on the research from Chapters 2 to 4, the role of Korea in contributing to the fight against pirates in Gulf of Guinea was studied.

In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deri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pirates of Gulf of Guinea and Somalia,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t was possible to deduce the future role of Korea.

The role of combating pirates in Gulf of Guinea in Korea, derived through this review,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 First, the activation of regional investment in Gulf of Guinea for regional growth of private Korean companies. Second, it i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combat pirates at the government level. Third, it is to support the construction of maritime security systems in the coastal countries of Gulf of Guinea from a military perspective.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Korea recognizes that the activity to combat pirates in Gulf of Guinea is neglected compared to the Somalia region, and examines and presents Korea's role in combating pirates in the recently emerging Gulf of Guinea reg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북쪽도 북한에 막혀 있어 사실상 섬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한 후 다른 물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수출입국가이다. 국제통화기금의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약 63.7%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 세계에서 상위권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무역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상운송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제적인 분업과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직접적인 자본 및 노동의 투입분으로서 국민소득의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자국 선박을 이용할 경우에는 외화지출을 절감시켜 외화절약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해상운송의 발전은 조선공업, 철강공업, 석유화학공업, 자동차공업, 해상보험업 등 관련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시에 여객선이나 일반 상선을 병력과 군수물자를 수송하는데 이용함으로써 국가안보역량의 강화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운송의 중요성은 실로 막대하며, 국가의 흥망성쇠가 해상운송의 안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오늘날 해상운송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종래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해양안보위협에 더하여, 해상테러리즘,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 대량살상무

1) 조학제, “해군함정의 해외 파견과 국제법적 쟁점(해적과 해상 테러리즘을 중심으로)”, 해군 군사학술용역 연구보고서, 2010, 3쪽.

기의 운송 등과 같은 비 전통적인 해양안보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 이는 1985년 Archille Lauro호 납치사건²⁾, 2000년 美 구축함 Cole 폭파사건³⁾, 2002년 프랑스 유조선 Limburg호 테러사건⁴⁾과 같은 해상테러리즘 사건과 2011년 삼호 주얼리호 납치사건⁵⁾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 등과 같은 일련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안보의 위협들 중에서도 특히 해적행위의 경우 최근 15여년 전부터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246건, 2016년 191건, 2017년 180건, 2018년 201건 2019년 162건 등 총980건의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가 발생하였고, 동 기간 동안 사망과 부상이 48건, 인질과 납치가 1,086건 등 심각한 인적피해 등을 야기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행위 발생이 아시아 지역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행위 퇴치에 대한 지역 협력 협정(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이하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⁶⁾)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
- 2) 1985년 10월 7일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하여 Port Said로 가던 이탈리아 여객선 Achille Lauro호가 수에즈 운하 부근 공해상에서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alestine Liberation Front) 소속원에 의해 납치되었으며, 납치 목적은 이스라엘이 구금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게릴라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김태준, 「테러리즘, 이론과 실제」(서울 : 도서출판 붕명, 2006), 202-203쪽.
 - 3) 2000년 10월 12일 예멘의 아덴항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해군 Cole 구축함에 폭탄을 적재한 소형 고무보트가 함미 부분에 충돌하여 17명이 사망하고, 구축함은 대형 운반선에 적재되어 미국으로 운반된 사건이다. 김태준, 앞의 책, 204쪽.
 - 4) 2002년 10월 6일 예멘 동부 알마라카 항구 부두에 정박해 있는 프랑스 유조선 Limburg호가 폭탄을 적재한 보트의 자폭테러에 의해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원유 90,000드럼이 유출되어 해상이 오염된 사건이다. 김태준, 앞의 책, 201쪽.
 - 5) 2011년 1월 15일 소말리아에서 1,280km 떨어진 인도양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우리나라 국적선박 삼호주얼리호가 납치되었고, 소말리아 해적이 석방금을 요구하였으며, 동년 1월 21일경 청해부대 6진 최영함에 의해 해적으로부터 승선원 21명이 모두 구출된 사건이다. 해적 13명 중 해적 두목을 포함한 8명은 사살되었으며, 이외 5명은 생포되었다.
 - 6) ReCAAP(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아시아지역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이며, 1990년대 이후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에서의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가 급격히 증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방지 및 진압하기 위해 채택된 정부간 협정으로 회원국들의 다각적 협력을 도모함을 목표로 탄생되었다. 2004년 11월 11일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2006년 9월 4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2006년 11월 싱가포르에 ‘정보공유센터(ISC : International Sharing Centre)’를 구축하고 국가별 ‘전담연락창구’를 설립하였다. 운영하여

노력으로 감소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간주되던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 해역도 국제사회의 공조와 해적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 활동이 감소세에 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 서부지역 주변해역인 기니만 해역 근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해적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해적들은 과거 '생계형 해적'의 형태에서 점차 고도로 조직화되고, 신속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류탄 발사기 등으로 중무장하여 선박을 공격하고 납치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국제사회 전반에 커다란 위협으로 지속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인식하여 국제사회는 해적행위와 해상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대응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함정을 파견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자원의 주요통로가 되는 아덴만의 해적퇴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삼호주얼리호 피랍시 구출작전 수행 등 성공적인 대 해적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적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기니만 해역에서의 대 해적작전은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다. 2018년 3월 27일 기니만 인근에서 우리나라 어선 마린 711호가 기니만 해적에게 피랍되었고, 그 소식을 접한 청해부대(문무대왕함)가 인근해역으로 급파되어 작전을 수행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어선 마린 711호는 피랍 한달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청해부대가 아프리카 동부해안에서 서부해안으로 이동하는데 약 20일이 소요되었으며, 그 후 약 13일만에 우리나라 선원들이 무사히 해적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청해부대가 기니만 인근에서 작전을 함으로써 해적이 부담을 느껴서 협상이 잘 이루어 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사례에서 보면 해적이 많이 창궐하는 지역에 군함을 파견하여 작전을 수행하면

체약국간의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해적피해방지 역량강화, 해적피해 대응 방안 연구, 해적관련 사고접수, 전파 및 정보교환, 해적사고 발생 시 연안국에 정보요청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 및 미국, 호주 등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적퇴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군은 북한과 대치하는데 많은 해군 전력을 할애하고 있으므로 아프리카 동·서해역 2곳 모두 해적퇴치를 위한 군함을 파견할 수 없다. 만약 아프리카 동·서해역 2곳 모두에서 해적행위가 발생한다면, 2곳 모두 우리나라 해군이 대응할 수 없을뿐더러 앞의 사례에서와 같이 작전구역으로 이동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 해적의 위협이 가장 높은 기니만으로 해군을 파견하기에는 그 해역을 지나는 우리나라 선박은 아덴만을 지나는 선박보다 수적인 측면에서 훨씬 적으며, 에너지 수송로의 핵심항로인 아덴만을 비워두고 기니만에서 해군함정이 작전을 수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기니만 해역에서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안전을 포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기니만 해역 해적퇴치를 위해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해적행위의 국제법적 및 국내법적 정의를 연구하고, 전 세계 해적행위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해적행위의 심각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소말리아와 기니만 해적과 해적퇴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 검토한다. 소말리아와 기니만에서 해적이 창궐할 수 밖에 없는 원인과 소말리아와 기니만 해역 해적조직의 구성과 해적행위의 특징을 연구하고, 해적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현재 취하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4장까지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검토한다. 검토내용으로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민·관·군 분야의 기여방안을 연구하고, 특히 군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으로 검토하여,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기니

만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최종요약하고 결론을 서술한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해적행위와 관련한 문헌조사를 통한 서술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와 관련된 문헌들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해적행위의 연구 논문,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단행본 등을 참고하였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아프리카 동서해역에서 발생하는 특히, 소말리아와 기니만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 해적행위의 정의 및 발생현황

제1절 해적행위의 정의

해적행위는 해양활동이 시작된 고대시대부터 발생하였으며, 17세기 이전, 즉 유럽의 대항해시대의 이전의 해적활동은 대양이 아니라 근해 또는 좁은 수역에서 이루어졌으나, 해상무역을 확대되고 식민지 활동이 활발해진 대항해시대 이후 해적들의 활동무대가 넓은 바다로 옮겨갔다. 해적행위는 “해상에서 제3자의 선박이나 그 선박에 실린 재화와 화물, 때로는 선박을 피랍하거나 실린 물건을 약탈하는 행위” 또는 “공해상에서 폭력과 약탈로 해상항해를 위협하게 만드는 것이나 행위”로 지칭되고 있다⁷⁾. 따라서 해적행위는 오래전부터 발생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국제관습법상 모든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의 명령을 받은 선박이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해적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다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는 해적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해사기구의 해사협약 등 국제적 법규를 채택,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해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⁸⁾

I. 국제법적 및 국제기구상 정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 제101조⁹⁾에 서는 해적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

7) 이은영, “해적(Piracy)과 동아시아 해로안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8쪽.

8) 손태기,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제상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6쪽.

9) 협약 제101조 원문(Piracy consists of any of followings acts)은 아래와 같다.

(a) any illegal acts of violence or detention, or any act of depredation,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해상에서 사적 목적으로 2척 이상의 선박이 관여하는 선박 또는 승객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제101조를 참고하여 해적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도 알아보면,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적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사적 목적(private function)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적 목적이란 사적인 이유 또는 이득을 위한 목적, 예컨대 어떤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자기의 사적 이득을 위해 정치적 목적도 없이 또는 본국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고 다른 선박을 강탈하거나 또는 선박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한 경우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테러리스트의 행위는 해적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둘째, 해적행위는 민간선박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 또는 거기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이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2척의 선박이 관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박의 승무원이나 여객에 의해 자행된 행위로서, 선박 자체나 선박에 탑승한 사람이나 재물에 대한 행위, 예를 들어 선원 등의 선상반란(mutiny)이나 이들에 의한 선박의 납치(hi-jacking)는 해적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셋째, 해적행위는 공해상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구 또는 영해 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의하는 해적행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¹⁰⁾. 위 규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공해상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민간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private ends)’으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committed for private ends by the crew or the passengers of a private ship or a private aircraft, and directed:

(i) on the high seas, against another ship or aircraft, or against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such ship or aircraft;

(ii) against a ship, aircraft, persons or property in a plac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b) any act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a ship or of an aircraft with knowledge of facts making it a pirate ship or aircraft;

(c) any act of inciting or of intentionally facilitating an act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r (b).

10) 목진영 외 2명,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방안」(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연구서, 2010), 10~12쪽.

가 있어야 해적행위가 인정된다.¹¹⁾

이외에 국제해사기구는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에 대하여 「해적행위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법적 행위를 의미하고, 무장강도란 한 나라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폭력, 감금, 약탈 또는 불법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해역을 지리적 및 법적인 측면에서 2개의 범주로 나누어 공해상에서의 불법적 행위는 해적행위로 분류하고, 항구 또는 영해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는 무장강도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해사국(International Maritime Bureau:IMB)¹²⁾은 해적행위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해적행위란 절도 또는 기타의 범죄행위를 의도하고 자신의 행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력의 사용을 의도하거나 무력을 갖추고 다른 선박에 승선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해적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하는 장소적 제한 문제 및 정치적 동기를 가진 테러리스트의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공해상을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한 행위뿐만 아니라 항구와 정박지에서의 선박에 대한 행위 및 정치적 동기를 가진 테러리스트의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적행위의 개념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다.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제1조제1항은 해적행위개념의 정의를 ‘민간 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공해상의 다른 선박 또는 그 선박 내의 사람이나 재산과 국가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곳에 있는 선박,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를 비롯해 이러한 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포함해 해적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유엔법협약 제101조의 해적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

11) 손태기, 앞의 논문, 8쪽.

12)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내에 설치된 선박업무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각종 해상 불법행위 및 해적의 대응을 위한 중심기관인 동시에 관련 단체들에게 정보교환 및 적절한 협력을 실시하는 실무기관이다.

13) 목진영 외 2명, 앞의 책, 12~14쪽.

II. 국내법상 정의

우리나라 국내법상 해적행위의 정의는 2019년 9월 21일에 시행된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 해적피해예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해적피해예방법 제2조 제5호에서는 해적행위를 ‘민간선박의 선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공해상 또는 어느 국가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다른 선박이나 그 선박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와 ‘어느 선박이 해적선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해상강도행위를 ‘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 행하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법상으로는 ‘해적’ 또는 ‘해적행위’라는 범죄개념은 존재하는 않는다. 다만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형법 제340조(해상강도죄)¹⁴⁾와 선박위해처벌법¹⁵⁾이 있다. 형법 제340조에서는 “다중(多衆)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상강도란 ‘해상에서 선박이나 화물을 탈취하거나 승무원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불법적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다.¹⁶⁾ 선박위해처벌법은 전체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적행위’란 용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5조에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14) 형법 제340조는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15) 2003년 우리나라는 SUA 협약에 가입하여 국내이행입법이 없더라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지만, 해상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하여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5월 27일 제정(2012.2.12. 개정)되었다. SUA 협약에서 규정하는 해상테러행위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입법이 필요하여 국내법에 수용하게 되었다. 김도준, “해적퇴치에 관한 법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22쪽.

16) 손태기, 앞의 논문, 11쪽.

서 폭행·협박·살인 및 그 예비, 제6조에서 선박납치, 제7조 선박 등 손괴, 제8조 선박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의 손괴 제12조 선박납치 등 살인·치사·상해 및 치상 등 해적행위와 유사행위인 해상테러 행위에서 대한 처벌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법이다. 또한 삼호주얼리호 해적 피랍사건 대법원 판례시 적용되었다.

제2절 해적행위의 발생현황¹⁷⁾

I. 연도별 발생현황

2007년부터 소말리아 내부정치의 불안과 경제악화로 소말리아 해역 및 아덴만에서 해적활동이 급증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아프리카 해역에서만 해적행위가 총 259건 발생하였다. 이 수치는 전체 발생건수인 445건의 약 60%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다. 2008년부터 국제사회는 해적퇴치를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국가별로 각종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200여건의 해적행위 및 해상강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표-1> 최근 10년간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발생현황	445	439	297	264	245	246	191	180	201	162	2,670

출처 : 해양수산부, “2013/14/18/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14/15/19/20

17) 해적발생현황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발생현황과 해양수산부에서 배포한 연간 전 세계 해적 발생 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II. 지역별 발생현황

2010년 이후 해적행위의 발생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해역에서 발생현황이 전체 발생현황의 약 91.6%이다. 아시아에서 약 30%, 아프리카에서 48%가 발생했다. 특히 전 세계 해적행위의 활동의 주요 활동무대가 아프리카 서·동부해역과 동남아시아이다. <표-2>에서는 해적행위의 주요 발생지역인 소말리아 해역, 서 아프리카 해역과 동남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적행위 발생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표-2> 최근 10년간 지역별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아시아 (동남아, 인도 등)	142	119	130	167	183	202	101	95	85	62	1,286
아프리카	259	293	150	79	55	35	62	57	87	71	1,148
기타 (남미 등)	44	27	17	18	7	9	28	28	29	29	236
계	445	437	297	264	243	245	190	176	201	162	2,660

출처 : 해양수산부, “2013/14/18/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14/15/19/20

1. 소말리아 해역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2010년에 217건, 2011년에 236건의 해적행위가 발생하는 등 해적행위가 성행하였으나, 2012년 이후 해적행위가 감소하여 2015년에는

0건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6년에 2건 2017년에 9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에 4건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해군의 해양안보 작전 및 해적 퇴치활동의 지속,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적극적인 해적퇴치 활동으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활동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RPG 등 자동화 무기로 무장하고, 피랍한 어선이나 Dhow를 모선으로 활용해 Skiff를 내려 공격하는 방식으로 먼 바다까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소말리아 해적은 여전히 공격력과 공격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격기회를 찾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상태와 맞물려 해적공격에 취약한 선박은 여전히 피랍가능성이 높은 해역이다.

<표-3> 최근 10년간 소말리아 해역 해적행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아덴만	53	37	13	6	4	0	1	3	1	0	118
소말리아	139	160	49	7	3	0	1	5	2	0	366
홍해	25	39	13	2	4	0	0	1	0	0	84
기타	0	0	0	0	0	3	3	3	2	4	15
계	217	236	75	15	11	3	5	12	5	4	583

출처 : 해양수산부, “2013/14/18/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14/15/19/20

2. 서아프리카 해역¹⁸⁾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매년 꾸준히 40여건 이상의 해적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특히 전년대비 약 80% 이상 증가하였다. 2019년 전 세계 해

18)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사고 발생현황 통계에서는 통계나라가 수시로 변경되어 자주 언급되는 나라로 구성하였으며,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베냉, 콩고공화국, 가나, 기니, 라이베리아, 콩고, 토고 국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발생 현황을 명시하였다.

적행위 피해의 41.4%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였고, 석방금을 목적으로 하는 선원·선박피랍 및 인질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 모든 피랍사건(4건)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였고, 선원납치 피해의 90.3% 차지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이다. 또한 서아프리카 해역 중 특히 나이지리아 근해에서 해적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나이지리아 해적은 성능이 우수한 총기를 소지하며, 공격이 여의치 않으면 총포를 사용(공격 미수 18건 중 12건)하는 등 폭력성·위협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3년 6월에 기니만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서·중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정상회담 기간 중 11개국 정상 및 국제연합(UN) 등 3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서아프리카 기니만의 해적활동 대응을 위한 MOU 체결 및 행동강령을 채택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였으나, 해적행위감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표-4> 최근 10년간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행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나 이 지 리 아	19	10	27	31	18	14	36	33	48	35	271
콩 고	1	3	4	3	7	5	6	1	6	1	37
가 나	0	0	0	0	4	2	3	1	10	3	23
카메룬	0	0	0	0	1	1	0	0	7	6	15
베냉	0	0	0	0	0	0	1	0	5	3	9
기 니	0	0	0	0	0	3	3	2	3	0	11
코트니부아르	4	1	5	4	0	0	0	0	0	0	14
토 고	0	6	15	7	0	0	0	0	0	0	28
기 타	17	35	11	6	12	6	7	8	3	19	124
계	41	55	62	51	42	31	56	45	82	67	532

출처 : 해양수산부, “2013/14/18/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14/15/19/20

3. 동남아시아 해역

동남아시아 해역에서는 좁은 수로 및 입항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투묘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주로 해적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각 연안국 정부의 적극적 해적대응 활동 및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을 통한 지역협력의 결과로 해적사고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약 80여건의 해적행위가 발생하는 위험해역이다.

<표-5> 최근 10년간 동남아시아 해역 해적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방글라데시	23	10	11	12	21	11	3	11	12	0	114
인도네시아	40	46	81	106	100	108	49	43	36	25	634
싱가포르해협	3	11	6	9	8	9	2	4	3	12	67
말레이시아	18	16	12	9	24	13	7	7	11	11	128
남지나해역	31	13	12	4	0	4	7	2	3	0	76
베트남	12	8	4	9	7	27	9	2	4	2	84
기 타	2	1	2	1	10	17	10	22	10	5	80
계	129	105	128	150	170	189	87	91	79	55	1,183

출처 : 해양수산부, “2013/14/18/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14/15/19/20

Ⅲ. 해적행위 공격유형

대부분의 해적행위 공격유형의 대다수는 선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선박 내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선박을 피랍하는 것이다. 2009년 소말리아 해적이 창궐 이후 총기발사의 공격유형이 많았으나, 연합해군의 작전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해적행위의 증가로 다시 총기발사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표-6> 최근 10년간 해적행위 공격유형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침입시도	89	105	67	28	28	27	22	22	34	14	436
총기발사	107	113	28	22	13	1	12	16	18	10	340
침입	196	176	174	202	183	203	150	136	143	133	1,696
피랍	53	45	28	12	21	15	7	6	6	4	197
의심/ 행방불명	0	0	0	0	0	0	0	0	0	1	1
총 계	445	439	297	264	245	246	191	180	201	162	2,670

출처 : 해양수산부, “2013/14/18/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14/15/19/20

IV. 인명 피해현황

해적행위로 인한 부상·사망은 많은 선박들이 쉼터 설치 등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소하고 있으나, 선원을 납치하여 석방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9년 납치피해자수는 작년대비 약 61.4% 이상 증가하였으며, 선원 납치 사고의 대부분은 서아프리카 해역(납치 : 90.3%, 121명)에서 발생하고 있다.

<표-7> 최근 10년간 인명피해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부 상	37	42	28	21	13	14	8	6	8	7	184
사 망	8	8	6	1	4	1	0	3	0	1	32
인 질	1,174	802	585	304	442	271	151	91	141	59	4,020
피 랍/ 석방금	27	10	26	36	9	19	62	75	83	134	481
기 타	24	33	17	11	11	28	15	16	9	9	173
계	1,270	895	662	373	479	333	236	191	241	210	4,890

출처 : 해양수산부, “2013/14/18/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14/15/19/20

V. 주요 피해선박

해적은 최대속력 15Knot 이하, 건현이 8m 이하의 주로 낮은 건현에 속력이 느린 중·소형 취약선박을 공격대상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케미컬·화학제품운반선 또는 산적화물선이 주공격 대상이다. 높은 석방금을 노리고 유조선, 컨테이너 운반선을 공격하기도 한다. 또한 해적공격에 취약한 트롤어선이나 어선에 대한 공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8> 최근 10년간 주요 해적 피해선박 종류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산 적 화물선	80	100	66	53	55	86	52	38	59	46	635
유조선	43	61	32	39	24	20	13	19	16	19	286
화학제품 운반선	96	100	76	56	86	62	56	42	50	45	669
컨테이너 운반선	74	62	39	30	20	30	10	23	18	14	320
예인선	20	32	23	14	7	10	14	11	11	7	149
기 타 (어선 등)	132	84	61	72	53	38	46	47	47	31	611
계	445	439	297	264	245	246	191	180	201	162	2,670

출처 : 해양수산부, “2013/14/18/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14/15/19/20

제3장 소말리아 해적과 해적퇴치를 위한 노력

제1절 소말리아 개요 및 해적 발생배경

I. 소말리아 개요

소말리아의 정식 명칭은 소말리아 공화국(Federal Republic of Somalia)이다. 북쪽은 아덴만, 동쪽과 남쪽은 인도양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안선 길이가 3,025 km에 달한다. 면적은 63만 7657km², 인구는 1126만명(2018년 기준)이며, 수도는 모가디슈(Mogadishu)이다. 국민의 약 85%가 소말리아인이며, 기타 험족, 반투족과 아랍족, 유럽인이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 수니파로, 이는 사실상 국교나 다름없다. 공용어는 소말리아어 이나 아랍어도 역시 공용어로 사용되고, 이밖에 남부는 이탈리아어와 북부는 영어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하고 북쪽 해안지방은 고온이며 남쪽으로 갈수록 강우량이 많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며, 의회구성은 양원제 이다. 대통령은 Mohamed Abdullahi Mohamed "Farmaajo" (파르마호)이고, 총리는 Hassan Ali Khaire (카이르)이다. 소말리아 내의 미승인 국가 소말리랜드의 대통령은 Muse Bihi Abdi(아브디)이다. 내전으로 인하여 제조업은 폐업상태이며, 대부분 농·축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자원은 우라늄·철광석·보크사이트·구리·철광석 등으로 천연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국민총생산은 47.2억 달러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315달러이다. 최근 주요정세로 1991년 Barre 대통령 축출 이래 실패국가로 전락하였으며, 동년에 소말리아 북부 일부지역은, '소말리랜드'로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미승인 상태이다. 2004년 9월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과도연방정부(Transitional Federal Government : TFG) 수립되었고, 2012년 8월 20일 신연방회의가 구성되어 과도체제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소말리아내 알샤밥 등이 주도하

는 테러 공격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세 불안정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¹⁹⁾. 최근인 2019년 10월 시내 사모호텔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대학 졸업생 20여명과 교수 등 정부관리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12월 28일에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차량폭발로 사망자 79명, 부상자 149명이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²⁰⁾



[그림-1] 소말리아의 위치(출처 : 국방대학교 PKO 센터, 「소말리아 핸드북」(2010), 2쪽.)

II. 해적행위 발생배경

소말리아는 1991년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내전을 겪었으며, 내전 종식과 국내 안정화를 위해 2002년부터 케냐 정부 주도하에 과도연방정부를 구성하였고 2004년 유수프 아메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계속되는 혼란을 겪고 있고, 2006년 이웃국가인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 내정 안정화를 위해 개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어 2년간 15,000여명의 민간인 사상자와 110만 여명의 인구 이동, 47만 여명의 난민발생 등 대혼란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소말리아는 국내 정세가 지속해서 불안정하고 안정된 정부가 없는 이른바 ‘실패한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이다. 소말리아 해적은 내전으로부터 비롯된 군벌출신들의 전사가 대부분이며 해적행위 발생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19) 외교부 홈페이지 : 국가/지역정보, 소말리아 공화국, 검색일 : 2020년 7월 5일.

20)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1229_0000873636, 검색일 : 2020년 2월 25일.

1. 정치·사회적 문제

소말리아는 2004년 10월 국제연합 승인 하에 과도연방정부가 출범되었으나, 2006년 6월 과도연방정부에 대항하는 강경파 이슬람 반군인 이슬람 법정연대 (Islamic Courts Union)가 정부군과의 교전 끝에 수도 모가디슈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2007년 4월부터 아프리카 연합(AU)이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을 창설하고 미군과 에티오피아군이 개입하여 반군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평화와 안정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이슬람 법정연대 강경파 청년 군사 조직인 알 샤바(Al Shabaab)의 평화협정 거부로 무장투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무장투쟁의 결과로 법질서와 치안조직이 마비되었고, 해적을 통제할 수 없는 중앙기관의 부재로 해적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이슬람 법정연대가 약 6개월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를 점령 후 이 일대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였고, 이 때 이슬람 법정연대가 해적행위를 이슬람 율법에 의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여 해적행위 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던 것을 볼 때 무정부 상태 및 내정 불안정, 즉 정치, 사회적 불안정이 해적행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²¹⁾

2. 경제적 문제

1991년 내전발생 이후부터 소말리아 연안에서 조업 역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것을 인지한 외국어선들이 소말리아 연안에서 남획 등 불법어업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외국적 선박들이 산업폐기물이나 방사능물질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소말리아 주민들의 조업활동이 붕괴되었고, 오랜 내전 및 무정부 상태로 다른 산업역시 황폐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생계형 형태의 해적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소규모 해상민병대를 조직하여 불법조업 외국

21) 최근하, “해적의 국제 해상운송로 위협과 대응방안 -소말리아 해적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4쪽.

어선을 나포하고 입어료를 징수하는 등 정상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 소말리아 군부가 자국 영해 내에서 조업하던 외국어선을 나포하여 금전을 강탈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말리아 푼틀랜드(Puntland) 해역에서는 주민들이 해적행위를 자국 영해에 들어와 조업하는 외국적 어선들에 대한 정당한 세금 또는 입어료 징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적법한 행위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표-9> 푼틀랜드 자치정부와 해적 수입 비교(2011년 기준)²²⁾

푼틀랜드 자치정부 GDP	해적 수입	소말리아 전체 어획고	선박 1척 석방금
\$1천만	\$1억 3,500만	\$150만	\$100만~1,700만

푼틀랜드 자치정부의 예산과 해적행위로 인한 수입을 비교해보면 푼틀랜드 자치정부 GDP는 1천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해적수입은 1억 3천 5백만 달러이다. 또한 소말리아 해역 전체 어획고는 150만 달러에 불과하나, 선박 1척은 1백만 달러 이상으로 아주 매력적인 고수익 사업이다. 이와같이 해적행위가 매력적인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2004년에 소말리아 동부 ‘하라데라’ 지역에서 최초로 해적조직이 결성되었고, 2005년에 이 해적조직이 소말리아 연안을 통과하는 대형 상선을 피랍하면서 소말리아에서 해적활동이 본격화 되었다.²³⁾ 이와 같이 암담한 경제현실과 중앙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함에 따라 소말리아 젊은 계층에서 손쉽게 돈벌이가 되는 해적행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해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해적행위는 생계가 어렵거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나타나며, 오랫동안 내전에 시달린 소말리아도 대부분의 지역경제가 파괴됨으로써 주민들이 생계수단으로써 해적행위를 선택하였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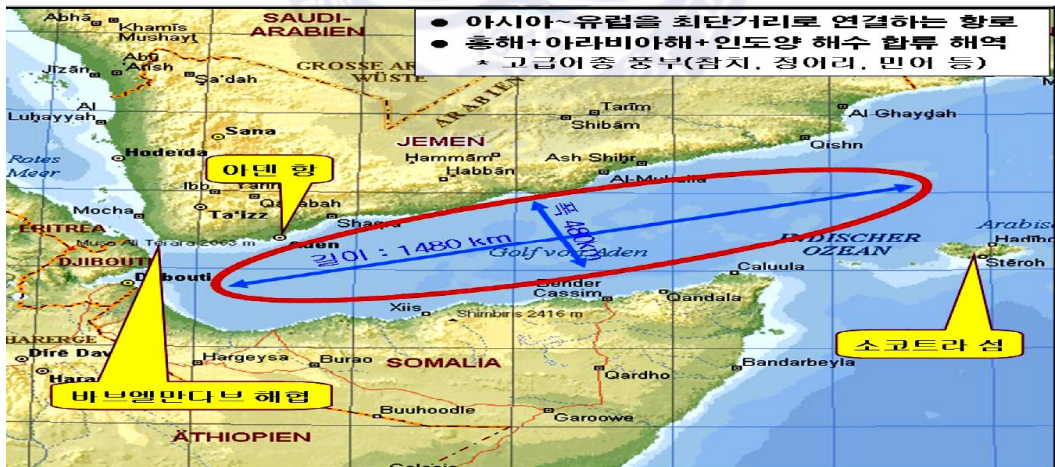
22) 해군작전사령부, 국제해적동향 보고서, 73쪽.

23) 국방대학교 PKO센터, 「소말리아 핸드북」(서울 : 국방대학교, 2010), 14쪽.

24) 최근하, 위의 논문, 25쪽.

3. 지리·환경적 측면

소말리아는 지리적으로 긴 해안선을 갖고 있어 어디에서나 바다와의 접근이 용이하며 해안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해적 배출의 중요한 배경이다. 소말리아 동북부의 아덴만은 세계 해상운송로의 요충지가 되는 수에즈 운하와 바브엘 만다브 해협과 연결되어 있어 매년 아시아와 유럽으로 크루즈 여객선, 원유, 군수물자 등을 적재한 상선·화물선·유조선이 많이 통과하고 있으며(연평균 16,000 ~ 20,000척), 이는 전 세계 물동량의 약 30%가 아덴만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 해상교통로인 아덴만의 좁은 항로를 통항하기 위해 선박들이 속도를 줄여야 하므로 소말리아 해적은 비교적 용이하게 해적행위의 목표물을 찾을 수 있다. 또한 3,000km나 되는 소말리아의 긴 해안선이 해적들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피랍할 선박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²⁵⁾ 또한 소말리아의 긴 해안에 걸쳐 열대림과 늪지가 산재해 있고 이러한 지형은 해적이 은신처로 사용하기가 좋아 많은 해적기지들이 해안선을 따라 산재해 있다.



[그림-2] 아덴만의 지리적 특징(출처 : 한국 해군 해양전술정보단 국제 해적활동 분석)

25) 윤현근,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위협과 그 극복방안”, 「교수논총」 제17권 제1호, 국방대학교(2009. 2.), 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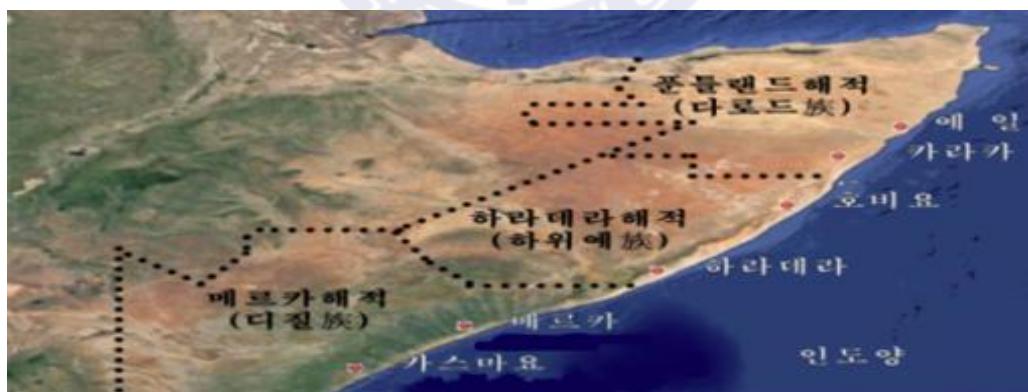
제2절 해적조직의 구성 및 해적행위의 특징

I. 해적조직의 구성

소말리아는 씨족중심 사회로 구성되어 있어 해적들도 씨족과 출신지역을 기준으로 3개의 해적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북부 펀틀랜드 지역의 다로드 족, 둘째, 중부 지역의 하위예족, 셋째, 남부 메르카 지역의 디질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²⁶⁾

<표-10> 씨족 구성에 따른 소말리아 해적조직 구성²⁷⁾

구분	규모	비고
펀틀랜드 해적 (다로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일항을 거점으로 활동 지역 행정관리와 주민들이 해적행위 이익금을 분담 	활발한 활동
하라데라 해적 (하위예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라데라, 호비요을 거점으로 활동 군벌출신 인원이 지휘하는 것으로 추정 	-
메르카 해적 (디질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르카항을 거점으로 활동 선박피랍 후 하라데라, 펀틀랜드 해적에 이양 	인질협상 능력 미약



[그림-3]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지역²⁸⁾

26) 김중련,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확대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논문, 2011, 30~31쪽.

27) 김중련, 위의 논문, 30~31쪽.

소말리아 해적을 세력구성으로 분류하면 푼틀랜드 그룹(Puntland Group), 소말리아 해병대(Somali Marines), 메르카 그룹(Marka Group), 자원해양경찰(NVCG : National Volunteer) 등 4개의 주요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1> 소말리아 해적 세력구성²⁹⁾

소말리아 해적 조직	규 모	활동거점
푼틀랜드 그룹 (Puntland Group) * 다르드 족	1만명	푼틀랜드 연안(북부)
소말리아 해병대 (Somali Marines) * 하위예족	13만명	히라테라항(중부)
메르카 그룹 (Marka Group) * 디질족	5천명	메르카 연안(남부)
자원해양경찰(NVCG : National Volunteer)	1만명	키스마요 항

조직원들은 과거에는 해안경비대 출신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지역 젊은 이들이 쉽게 많은 돈을 벌 목적으로 해적행위에 가담하고 있고, 하위급 해적들은 대개 하루하루 고용된 어부들로 구성되어 있다.³⁰⁾ 조직 구성은 지역 군벌(배후자금 지원), 해적 두목 및 행동대원(해적행위 실행), 지역주민(피랍선박 및 선원감시) 등으로 구성되고, 지역 군벌의 배후자금을 통해 국제테러단체로부터 무장 및 장비 지원을 받아 해적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해안에 움막촌을 짓고 약 1,200여명의 예비조직원이 거주하고 있다.³¹⁾

28) 손태기, 앞의 논문, 44쪽.

29) 김중련, 앞의 논문, 33쪽.

30) 손태기, 앞의 논문, 44쪽.

31) 최근하, 앞의 논문, 26쪽.

II. 해적행위의 특징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의 대부분이 선박과 승무원을 인질로 삼아 거액의 인질 몸값을 요구하는 추세이다. 2007~2008년만 하더라도 인질몸값이 수천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3~2014년 이후 2~3백만 달러로 높아졌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상승하고 있다.³²⁾ 대체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몸값은 해적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적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빠른 소형선박을 자선으로 운용하고, 대형어선이나 피랍한 선박을 모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적들의 활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화되고 있으며, 점점 준군사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조직화 및 기업화이다. 소말리아 해적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소수 인원이 1~2척의 소형선박을 사용하여 해적행위에 참가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9년 이후 쾌속선은 물론 모선까지 동원하는 대규모 조직범죄 및 기업형 해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5~10척의 쾌속선이 조별로 나뉘어 1~2척은 경계 또는 호송정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나머지 선박으로 피랍하고자 하는 목표 선박을 집중 공격하는 속전속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공격개시 후 15분 내 피랍 실패 시는 인근 경비중인 해군선박이 보유한 항공기 출동을 예상하여 공격행위를 중단하고 재빨리 철수한다. 이렇듯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체계적으로 선박을 피랍하고 있다. 기업형 해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사용장비도 과거 자동소총·수류탄 등 소형 개인화기에서 로켓발사 수류탄(RPG)과 견착식 대공포(MANPAD)를 포함한 중·대형무기와 자동위치 추적장비 및 위성전화 등 첨단장비까지 동원하고 있다.³³⁾ 둘째, 해적 행위의 대담성 및 흉포화이다. 소말리아 해적은 일반 선박은 물론 함정 및 항공기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하는 등 대담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독일 유류보급함 공격(3.29.), 미 순

32) 손태기, 앞의 논문, 38쪽.

33) 최근하, 앞의 논문, 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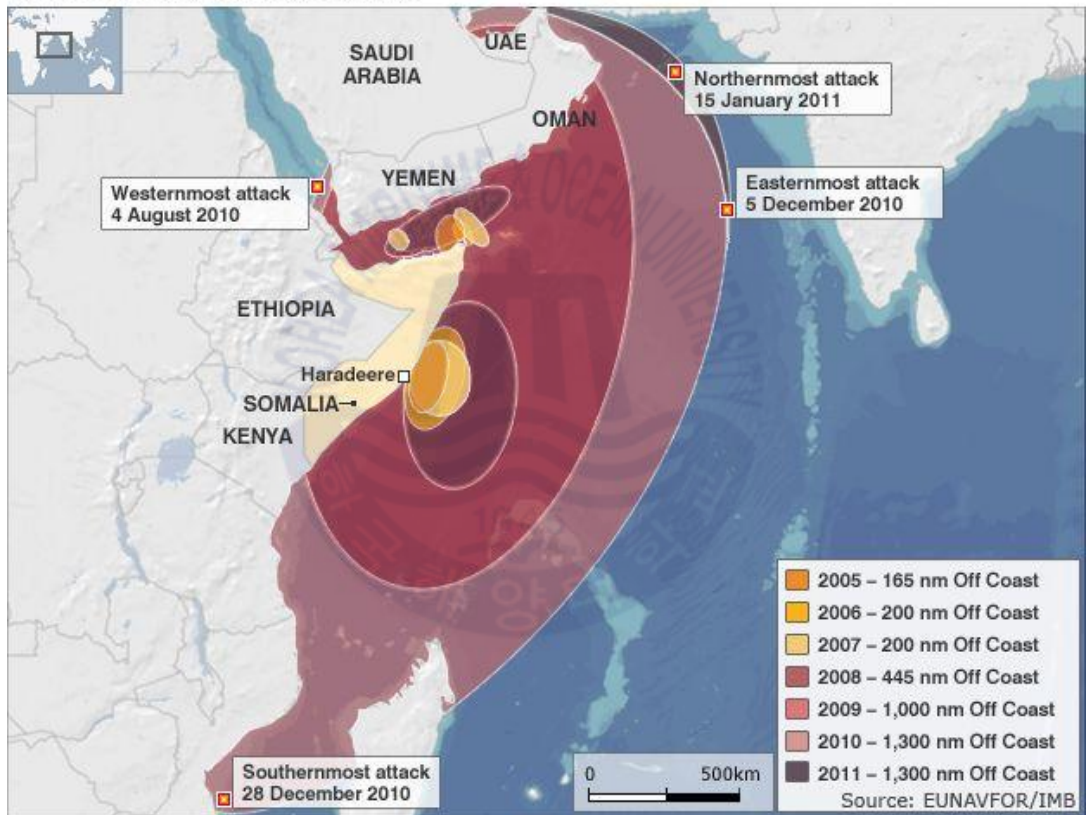
양함 탑재헬기(SH-60B) 대공사격(8.28.), 프랑스 군수지원함 ‘La Somme(A631)’ 공격, 영국 군수지원함 ‘Wave Knight’ 공격(10.29.)을 감행하였다. 군함에 대한 공격은 대부분 군수지원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군수지원함이 일반 상선과 유사하게 생겨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독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대담성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선단을 이루고 항해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공격을 감행했는데, 2009년 9월 19일 아덴만에서 ‘Harvest Mbon’ 등 상선 3척이 선단을 이루고 항해중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공격하였다. 과거 소말리아 해적은 공격대상 선박에 대한 피랍이나 공격이 실패할 경우 근거지로 복귀하였으나, 최근에는 공격이 실패할 경우에도 근거지로 복귀하지 않고, 공격 실패 인근해역에 대기하다가 다른 선박을 공격하고 피랍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009년 7월 13일 바벨만데브 해역 근해에서 동일한 해적들이 3차레에 걸쳐 다른 선박들에 대해 공격 및 피랍을 시도하였다. 해적들의 흉포화는 조직원들의 구성이 변화됨에 따라 더욱 심해지고 있다. 기존의 나이가 있고 경험이 많은 해적들은 재산을 축적하고 해적 퇴치활동이 강화되어 일선에서 많이 후퇴하였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10대 위주의 해적들이 대거 유입되어 소말리아 해적이 더욱 흉포화 되었다. 과거 해적들은 통산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을 장악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최근에는 사소한 저항에도 총격 등 무력사용을 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며 더욱 흉포화 되고 있다.³⁴⁾ 셋째, 해적의 활동해역이 아덴만에서부터 소말리아 동부해역 및 홍해, 오만까지 확장하고 있다. 2008년에는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해역이 주로 아덴만이었기 때문에 이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주요 표적 대상이었는데, 여러 국가에서 해군함정의 선박보호 활동으로 인해 해적들은 홍해, 오만 해안, 인도양 및 모잠비크 해협 등전 지역으로 확대하였다.³⁵⁾ 이로 인해 국제해사국은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위해 소말리아 해안으로부터 200마일 이상 벗어나서 항해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해적의 피랍 위험지역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해적들의

34) 최근하, 앞의 논문, 35~36쪽.

35) James Bridger, “A Failed State, Small Boats and Big Money: The Expansion of Somali Piracy and the World’s Response”, The Atlantic Council of Canada, at <http://atlantic-council.ca? p=2493>.

활동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해적들에게 공격을 받게 될 수 있는 위험지역 (risk zone)은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최대 1,450마일 해역까지 포함하게 됐으며,³⁶⁾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1년 1월 사이에 4척이 소말리아 하라디어 (Haradeere)를 중심으로 1,3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해적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⁷⁾

Expansion of pirate operations



[그림-4] 연도별 소말리아 해적활동해역 확장 현황³⁸⁾

넷째, 다양한 공격전술의 이용이다. 소말리아 동부 해역에서 해적 모자선 전

36) Ibid.

37) 손태기, 앞의 논문, 40~41쪽.

38)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12463951>, 검색일 : 2019년 2월 14일.

술 다양화로 기존에는 큰 어선을 모선으로 한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소형고속 보트를 자선으로 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대형 고속보트를 모선으로 소형고속 보트를 자선으로 운용하고 있다. 대형 고속보트를 모선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모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합해군 함정의 점담회피가 용이하다. 이는 대형 고속보트를 적극 활용하여 선박피랍 성공률을 높이려는 해적의 전술 변화로 보인다. 다른 전술의 다양화는 공격 시간대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선박들이 해적의 조기발견이 어려운 일몰 후부터 새벽시간에 주로 집중하여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주·야간 구분없이 전 시각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랍선박을 모선으로 가장하여 통항상선들로 하여금 긴장을 완하시킨 후 선박피랍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10월 15일 피랍한 싱가포르 상선 'Kota Wajor'호를 하라테라 동남방 약 100마일 해상까지 이동시켜 해적활동에 이용하였다.³⁹⁾ 다섯째, 해적행위의 지능화이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정보원을 이용하여 공격대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영국 가디언지에 의하면 해적이 영국에 정보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고가치선박을 공격 및 피랍하고 있다. 또 다른 정보수집 방법은 어선으로 위장된 선박을 정보선으로 활용하는 곳이다. 어선으로 위장한 선박이 공격대상을 물색한 후 통신을 감청하여, 공격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⁰⁾ 소말리아 해역 해적들은 과거처럼 무식하게 아무선박이나 피랍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돈이 되는 선박의 정보를 획득하고 선박을 피랍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 점점 지능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해적들이 범죄조직 및 테러단체와의 연계이다. 케냐의 한 해적 전문가가 선박을 직접 피랍하는 소말리아 해적들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나, 케냐 나이로비, 몸바사 등에 존재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범죄조직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일부 국제기구에서는 소말리아 이슬람 반군세력이 해적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39) ICC Commercial Crime Services, 「IMB Piracy Report」 (2009).

40) 최근하, 앞의 논문, 37쪽.

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은 히즈볼라, 이슬람·샤바이며, 해적들이 인질합의금의 5~10%를 육상기지 안전명목으로 이들 세력에게 지불하고 있고, 이들 이슬람 세력은 기초군사교육, 전술 통신훈련 등을 해적에게 제공하여 준다고 국제기구에서 평가하였다. 이슬람 웹사이트(2009.4.15.)에서는 ‘아라비아-알카에다’(AQAP)가 예멘 및 소말리아 앞바다에 해적퇴치 목적으로 파견된 미국과 유럽의 함정 공격을 주변지역 이슬람교도에게 촉구하였다. 미국의 크리스천사이언스(2009.4.13.) 또한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 중인 서방국가 해군이 증가 할수록 과격 이슬람단체들이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해적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하였다.⁴¹⁾

제3절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노력

I.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국제기구의 대응 노력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기구의 주요 대응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 둘째, 국제해사기구(IMO)의 활동, 셋째,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⁴²⁾)의 대응이다.

1)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

국제연합은 2000년대 중반이후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행위가 급증하자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회원국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국제연합 안보리에서는 2008년부터 국제연합 헌장 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따라 20여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들은 국제

41) 최근하, 앞의 논문, 37쪽.

42) CGPCS : the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연합 헌장 제7조에 근거하여, 소말리아에서만 적용된다.

<표-12> 소말리아 관련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현황⁴³⁾

결의안 (채택일)	내 용	비 고
1801 (2008.0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MISOM 임무를 2008.07.18.일까지 6개월 연장 국제연합 사무총장,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이 AMISOM 활동을 계승할 경우 발생할 위기 대책 수립 필요성을 요청 	위기대책계획 관련(S/PRST/2007.09) 및 관련 Res. 1772.
1811 (2008.0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말리아에 무기금수조치 재확인 소말리아 지도자들의 정치적 대화 필요성 강조 	Res. 1772, 1881.
1814 (2008.0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위기대책계획 작업 지속 요청 2009년 자유·민주선거를 위한 제헌절차 관련 일정준비 	선거관련 TFG 현장규정
1816 (2008.06.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적퇴치를 위해 채택일부터 외국 공권력의 소말리아 영해 6개월간 진입과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허용 	한일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1831 (2008.0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AMISOM 임무 6개월 추가 연장과 외국군 철수를 위해서 AMISOM 활동 촉진 필요 	Res. 1772.
1838 (2008.1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s 1816에 따라 TFG와 협력강조, 2008.10.07. <소말리아 사태(The Situation in Somalia)> 제목으로 채택 결의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 결의 제A-1002(25)호가 요구하는 적절한 사전 경고조치에 관한 권고와 지침마련 등을 촉구 	소말리아에 인도적 지원, 지부터 협정 실행을 위하여 국제연합에게 국제치안유지군 승인요청

43) 김도준, 앞의 논문, 94~96쪽.

결의안 (채택일)	내 용	비 고
1844 (2008.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말리아에 무기금수 조치 강화 	
1846 (2008.1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소말리아 해적퇴치에 있어 국제연합의 조정역할 강화 검토 소말리아 영해진입 승인기간 연장 (6개월 → 1년) 	
1851 (2008.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말리아 해적의 추적행위를 소말리아 내륙까지 허용 	
1853 (2008.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s 1844 준수강조, 소말리아에 국제연합 감시 그룹 설립제의 	Res. 1844.
1863 (2009.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부터 평화협정 준수강조, AMISOM 후원에 필요한 기금요청 	Res. 1744.
1872 (2009.0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말리아 분쟁해결의 기초로서 지부터 평화협정 강조 Res 1772(2007년)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들이 TFG군대들의 훈련과 무장에 참여토록 결정 	Res. 1772.
1897 (2009.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말리아 영해진입을 2010년 12월까지 1년 연장 해적체포 및 조사를 위해 법집행관의 승선을 촉구, 지역국가들의 사법능력 구축을 지원 	Res. 1846, 1851.
1910 (2010.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부터 평화협정에 지원 및 소말리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AMISOM에 기여를 촉구 소말리아 안보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TFG에 요구 	

결의안 (채택일)	내 용	비 고
1916 (2010.0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및 국제적 단체는 소말리아에 인도적 지원 강조 	Res. 1844, 1907.
1918 (2010.0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노력 촉구 • 해적(해상무장강도) 처벌에 관한 국내법 정비 요청 	Res. 1851, 1897.
1950 (2010.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모든 적절한 조치 승인기간을 12개월 연장 	Res. 1897, 1918.
1964 (2010.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부티 평화협정 지지 확인과 AMISOM 기여요청 및 이에 대한 적대행위 비난 • 국제인도법에 위반하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중지 요청 	Res. 1872, 1910.
1972 (2011.0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리아의 주권, 영토적 통일, 정치적 독립 존중과 무기 금수조치 준수를 강조 	Res. 1916.
1976 (2011.1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리아 해적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제의 • 해적활동 발생장소와 상관없이 어느 국가에서든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 • 해적을 구금 및 기소를 진행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경제적 지원을 촉구 	Res. 1918, 1950.
2015 (2011.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적범죄 처벌에 대한 각국의 국내입법을 제정토록 권고 • 소말리아내 특별재판소 및 수감시설 설치 등 각 국가에서는 체포해적의 적극적 기소와 처벌을 촉구 	Res. 1976.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중 중요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즉, 2008년 6월 2일 채택된 결의안 제1816호는 해적퇴치를 위한 외국정부의 소말리아 6개월간의 영해진입 허용, 소말리아 및 인근국가에 대한 기술 지원,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형사관할권 관련 국가간 협력 등을 포함한다. 이 결의안에 근거하여 소말리아 영해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군함들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적을 퇴치하는데 ‘모든 필요한 수단(all necessary)’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10월 7일 채택된 결의안 제1838호는 국제연합 회원국들에게 소말리아 해역에 군 함정과 항공기 파견 요청 등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제1816호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어 2008년 12월 1일 채택된 결의안 제1846호에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소말리아 해적퇴치에 있어 국제연합의 조정역할 강화를 검토하였고, 소말리아 영해진입 승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 2일부터 소말리아 연안외곽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협력하는 지역기구도 소말리아 영해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행위에 사용된 소형선박, 선박, 무기 또는 기타 장비들의 나포 및 처분을 통한 해적대응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2008년 12월 16일에 채택된 결의안 제1851호는 소말리아 해적의 추적행위를 소말리아 내륙까지 허용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소말리아 내륙에서의 군사력 사용승인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해적 기소 및 처벌 등 사법 처리 강화를 위해 소말리아 인근 국가들과의 사법공조체계 구축 및 해적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센터설립을 촉구하였다. 이 결의안을 근거로 2009년 1월 14일 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이 창설되었다.

2) 국제해사기구의 활동

국제해사기구는 자체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제연합 안보리에 상정하여 구속력과 실효성을 갖춘 해적퇴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해적퇴치 공조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1월 29일 개최된 총회에서는 “소말리아 근해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내용이 포함된 결의를 채택하였고, 이 결의문에 의해 해적퇴치를 위해 외국 군함·군용기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 허용이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소말리아 및 인근 국가의 해적퇴치 역량강화 지원, 해적 체포 시 재판·처벌을 위한 인접 국가간의 형사사법 공조체계 구축 등을 이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주도로 아프리카 해적퇴치 지역협정 체결준비를 위해 2008년 4월 14일 탄자니아에서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지역협정(이집트 등 동아프리카 19개국) 예비회의」를 개최하였다. 2009년 1월 29일 개최된 총회에서는 서인도양, 아덴만 및 홍해 인근 17개국이 지부티에서 ‘서인도양 및 아덴만 지역의 선박에 대한 해적 및 해상강도 억제에 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the Repression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the Western Indian and the Gulf of Aden : 이하 지부티 행동강령)⁴⁴⁾을 채택하였다. 이 지부티 행동강령은 해적문제해결을 위한 법제가 없다는 한계를 생각하여 국제법 체계의 사법마련, 연안경비대의 권한과 기술적 지원강화, 지부티에 훈련센터 설치, 해군과의 협력강화 및 연안국의 자체 감시능력 향상 및 해적정보센터(Regional Maritime Information Sharing Centre : ReMICS)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의 전 회원국으로 구성된 최고위 기술협력위원회이자 해상안전과 연관된 모든 문제를 검토하는 해상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 MSC)는 지속적으로 해적퇴치를 위한 회의⁴⁵⁾

44) 지부티 행동강령은 1. 소말리아 및 인근 8개국이 합의한 對소말리아 해적대응방안(2009. 01. 29. 발효) 2. 서명국은 소말리아, 케냐, 몰디브, 예멘, 지부티, 세이셸,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이며, 3. 주요내용은 ① (해적 체포 및 처벌을 위한 당사국간 협력 강화) 일방 당사국의 법집행 요원은 타방 당사국의 영해 내에서 해적 체포 등 법집행 활동에 참여 가능, ② (해적사건 관련 정보 공유 강화, 국가별) 연락창구(focal point) 지정, 정보공유 센터 설립(케냐, 탄자니아, 예멘 등), ③ 해적대응 훈련센터(지부티) 설치이다. IMO의 경우 ‘지부티 행동강령’의 채택 및 이의 이행을 위한 신탁기금을 위해 대한민국도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국제협력에 참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대책」, 2011, 11쪽.

45) IMO MSC 제82차 회의(2006. 11)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행위 방지 결의(MSC/Circ.1233)
 IMO MSC 제86차 회의(2009. 06) 해적저지를 위해 각국정부가 취해야 할 권고서(MSC/Circ.1333)
 해적예방 및 억제에 관한 지침서 (MSC/Circ.1334)
 해적행위 방지 결의 (MSC/Circ.1332, 1302)
 IMO MSC 제88차 회의(2010. 11) SOLAS개정(2012. 07. 01. 발효) 선박납치에 대한 보안담당관을

를 개최하고 이때 도출된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있다.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의 문제는 다양한 해결방법 및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국가 간에 또한 국제기구의 세부의견을 긴밀히 교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중요한 역할을 국제해사기구와 해상안전위원회가 아주 잘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해사기구는 2011년 세계해사의 날에 해적대응에 관한 6개항의 행동계획을 밝혔다.⁴⁶⁾

3)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국제연합은 안보리 결의 제1851호에 의거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동연락체(common point contact)로서 국제적 협력체계의 수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협의체인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을 창설했다. 창설회원국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등 62개국 및 국제연합/EU 등 21개 국제기구 및 해운업계가 참여하였다.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은 해적 관련 정보공유와 해적행위 처벌을 위한 사범공조 구축 등 해적퇴치를 위한 조치사항의 협조를 주요 임무로 한다.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은 소말리아 해적퇴치와 관련한 범세계적이고 가장 권위있는 회의이다.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은 국제협의체 및 4개 작업반(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협의체는 7개의 국제기구와 옵저버로 참가하는 2개의 주요산업단체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매년 3~4회 개최되는 전체회의와 4개의 작업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제1작업반은 영국이 주도하며 군사관련 활동과 작전협조, 정보 공유, 지역 협조센터 건립 등을 담당한다. 제2작업반은 덴마크가 주도하며, 국제연합

위한 지침서(MSC/Circ.1390), 김도준, 앞의 논문, 102쪽.

46) ① 해적에 의해 납치된 인질 석방을 위한 압박 증대, ② 주관청 및 선원을 위한 국제해사기구 지침을 개선하고, 선박이 취해야 하는 방어조치 준수, ③ 해군 지원확대 요청, ④ 해적방지를 위한 기국, 지역체, 기구 및 산업계간의 공조체제 강화, ⑤ 해적출몰지역의 기국이 해적을 자체적으로 처벌하고 줄일 수 있는 역량배양, ⑥ 해적에 납치되었다 석방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윤철, “소말리아 해적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부경대 해양법 정책토론회, 2011, 15쪽.

마약범죄사무소(UNDOC) 지원하에 해적퇴치의 사업 및 사범공조 체계구축을 담당한다. 제3작업반은 미국이 주도하며, 국제해사기구 지원하에 상선들의 자위력 신장 및 항해업무지원을 담당한다. 제4작업반은 이집트가 주도하며, 해적행위와 관련된 모든 외교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각국은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을 통해 해적행위처벌 법률강화, 군사작전 조정, 소말리아의 역량강화 및 소말리아에 대한 원조 상환, 케냐, 예멘 등 소말리아 인접국에 대한 해양안보능력 배양, 해적자금 흐름 차단 등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은 2009년 1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과제를 도출했다. 즉, ① 해적근절을 위한 작전·정보 지원개선(improving operational and information support to counter-piracy operations), ② 해적근절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establishing a counter-piracy coordination mechanism), ③ 해적 체포 및 기소, 구금을 위한 사법체계 강화(strengthening judicial frameworks for arrest, prosecution and detention of pirates), ④ 상선의 자구책 및 대응능력 강화(strengthening commercial shipping self-awareness and other capabilities), ⑤ 외교 및 공공정보에 대한 개선능력 추구(pursuing improved diplomatic and public information efforts) ⑥ 해적행위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 추적(tracking financial flows related to piracy) 등이다.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운영을 위한 재원은 해당정부, 국제기구, 해운업계 등의 민간부분으로부터 마련하고 있으며, 이 재원은 주로 케냐, 세이셸, 소말리아 해적소추를 위한 지역내 센터 지원사업, 소말리아 청년층의 해적 등 범죄행위 가담감소를 위한 계몽 등에 지원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은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무력사용, 사법권 집행 등의 강화 등 강경책 뿐만 아니라 해적행위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소말리아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

소말리아 해역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은 크게 3가지 그룹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연합해군사령부(Combined Maritime Forces : CMF)⁴⁷⁾, 둘째,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셋째, 유럽연합(EU) 이다. 이외에도 자국선박의 안전항해 보호를 위해 소말리아 해역내 단독작전을 수행 중인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해군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그룹 3가지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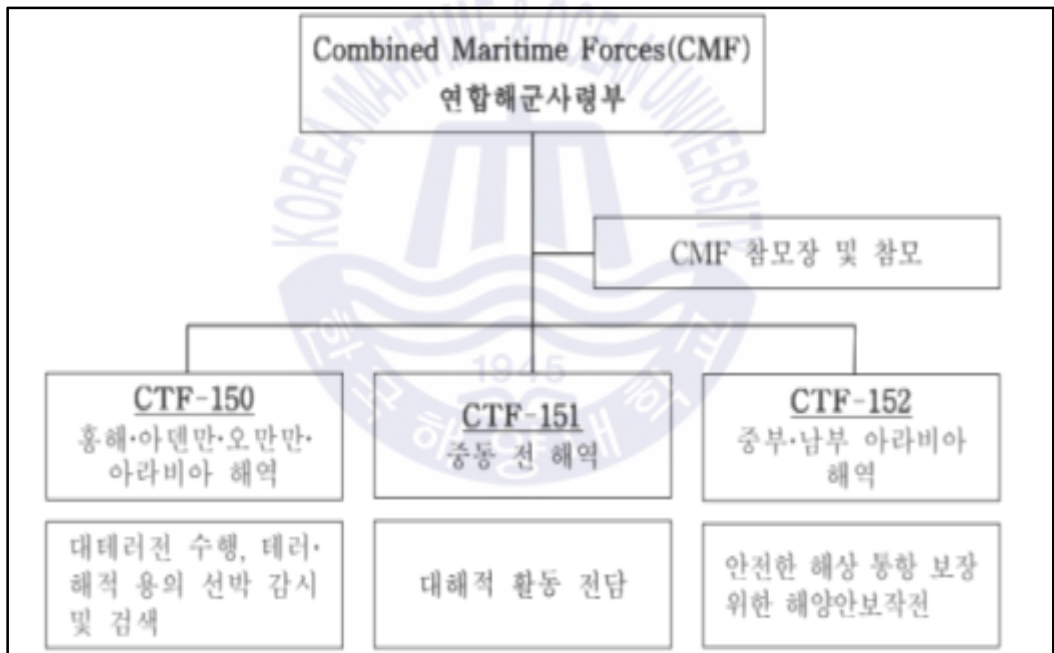
1) 연합해군사 CTF-151

연합해군사는 해적퇴치 관련 국제연합안보리 결의안에 의거 연합해군사 작전 구역에서 대 해적작전을 전담하기 위한 CTF-151(Combined Task Force-151)를 2009년 1월 1일 창설하였다. CTF-151은 CTF-150으로부터 대 해적작전을 인계받았고, 주요 임무는 국제 해양무역 보호와 해양안보 능력을 증진시키고 각국의 국익을 위한 안전통항을 보장하는 것이다. 작전구역은 인도양, 아덴만, 홍해 등이다. CTF-151의 최초 지휘관은 미국이 맡았으며, 이후 터키, 미국, 싱가포르, 태국, 우리나라, 덴마크, 뉴질랜드, 파키스탄 등이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였다. CTF-151에 전력을 지원한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터키, 영국, 싱가포르 등이다. CTF-151은 3단계 작전개념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첫째는 억제단계이며, 아덴만 및 소말리아 해역에서 작전 중인 각국 전력과 공조 및 전력 간

47) 연합해군사의 기원은 9. 11 테러 이후 해상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여 창설한 부대인 GCTF-M(Global Counter Terrorism Maritime)이 그 모체가 되었다. 창설 당시 예하에 CTF-150, 152, 158을 두고 있었다. 초기 대테러전 중심의 임무에서 참가국의 공통 위협과 가치를 반영하는 임무로 전 지구적 해양안보작전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라크 해상 유류공급 플랫폼 경비를 담당하던 CTF-158은 2008년 말에 이라크,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별도의 연합군 CTF-IM(Iraqi Maritime)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최초 대해적 작전은 CTF-150에서 수행하였으나, 2009년 대해적 작전을 전담하는 CTF-151이 창설되었다. 연합해군사(Combined Maritime Forces: CMF)는 조직상 그 상위부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합해군사에의 상급부대로부터 하달된 명시과업이나 지침은 없다. 연합해군사령관은 회원국의 공통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전 지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임무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임무는 회원국이 참가하는 지휘관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임무의 정당성 확보와 장기적인 작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합해군사령관 비전을 작성하여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도출된 연합해군사의 임무는 ① 폭력적 극단주의자 및 테러조직들의 해양활동을 격멸 및 분쇄, ②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감소, ③ 지역해양안보 유지, ④ 해양관련 조직/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유도, ⑤ 지역 국가 해양작전 능력향상이며, 작전 방향은 ① 해양안보작전, ② 폭력적 극단주의자 대응이다. 손태기, 앞의 논문, 109쪽.

에 발생할 수 있는 작전 간섭을 방지한다. 둘째는 해적행위 억제 및 분쇄단계이며, 해적행위와 해상강도행위 및 해적의 선박접근차단이다. 셋째는 진압 및 공개/비공개 교전단계이며, 해적행위/시도 발생 시 연합해군 작전상황과 전력요소를 고려하여 대응작전을 진행한다. 이러한 작전이외에도 작전해역 및 해적행동 양상에 대한 정보수집 임무도 병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CTF-151의 주요활동으로 아덴만 근해 약 110만 평방마일 해역에 대한 연합해군함정의 순찰과 지원의 최적화, 아덴만 항해선박의 안전항해와 충돌예방을 위한 별도항로 설정 및 고 위험지역 항해 시 행동요령 등 항해 선박의 안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표-13> 연합해군사 조직도



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CTF-508

북대서양조약기구는 2008년 10월 24일 해적퇴치작전과 통항선박 보호를 위하여 해양전투단(SNMG : Standing NATO Maritime Group)을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견하였다. 해양전투단의 임무는 EU, CTF-151의 작전보강과 아덴만 연안

3개국(예멘, 소말리아, 지부티)을 향해하며 해적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연합 요청시 세계식량기구(WFP)의 소말리아 식량수송업무를 지원한다. 해양전투단은 2개의 해양전투단(SNMG 1, 2)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순환하면서 대 해적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SNMG 1은 독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고, SNMG 2는 영국 덴마크, 미국, 캐나다 등이다. 그러나 NATO군은 지중해 난민문제, 소말리아 해적감소 등의 이유로 2016년 9월 5일 나토 대 해적작전임무를 종료했다.

3) 유럽연합(EU) CTF-465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안보방위정책(ESDP)⁴⁸⁾에 따라 NATO로부터 해적임무를 인계받아 2008년 소말리아 '유럽연합 해군부대'(Operation EU Navfor Atlanta)를 창설하여 유럽의 대 해적작전인 '아탈란타작전'(Operation Atlanta)을 진행하고 있다. CTF-465의 임무는 세계식량기구(WFP) 선박보호, 소말리아 인근해역 운항 상선보호, 소말리아 연안 정찰활동 및 해적소탕 작전이다. CTF-465의 임무는 소말리아 해적퇴치에만 제한되고 보호대상은 유럽연합 선박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비 유럽연합 회원국 선박도 호송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 중인 CTF-151 및 CTF-508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세이셸 인근해역 및 홍해까지 작전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육지에 본거지를 둔 해적들을 해상에서 근본적으로 소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소말리아 군 훈련 임무단을 조직하는 등 소말리아 군의 자체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주요 참가 국가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며, 작전 참가 국가는 함정 및 항공기를 파견하고 있다. CTF-465의 작전지휘관은 함정 파견 국가별 4개월 주기로 순환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48) ESDP는 유럽연합의 자체 군사기구로 2003년 마케도니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 통합군을 파병하였다. 2007년 1월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유럽연합 작전센터를 가동, 현재 15,000여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전투부대 15개가 있다. 김태준,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소말리아 해적위협을 중심으로" 「교수논총」 제18권 제2호, 국방대학교(2010. 2.), 65쪽.

II.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비군사적 대응

우리나라 정부는 민관으로 해적피해방지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적에 대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이러한 대응책의 주요사례로 첫째, 인도와 함정호송협력 MOU를 체결하여 아덴만에서 우리나라선박에 대한 호송능력을 증강시켰다. 둘째, 해적위험해역을 설정하고 운영구역을 과거 아덴만 및 남부인도양에 한해 국한적으로 설정하던 것을 현재는 아덴만 및 인도양 전체해역에 해적위험해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와 청해부대 및 운항선박간 상시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청해부대에 해적위험해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선박의 위치추적과 선박보안경보의 신호수신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국내적 노력과 더불어 국외적으로도 해적대응을 위해 2007년 11월 국제해사기구 정책결정에서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결의서’를 채택하는데 기여하였고,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이행 등 국제사회의 해적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말리아에 경제원조 및 안정적인 정부수립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예멘, 케냐 등 인근 국가들의 해적자금 흐름차단, 해양안보능력 배양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⁴⁹⁾

2. 군사적 대응

청해부대의 파병은 소말리아해역에서의 해적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정부가 국군부대의 파견을 결정하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파견 동의안⁵⁰⁾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국회가 동의함으로써 이루어

49) 2010년에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예멘 연료탱크 설치사업에 5만달러를 지원하였고, 국제이주기구(IOM)은 코스트가드에 텐트, 의약품, 구명용품을 제공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해적행위 퇴치역량강화 등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억 원의 기술협력기금을 동 센터에 기부하고 있다. 구)해양경찰청 駐예멘 우리나라 대사관 보고서, 2011. 3. 4.

졌다.

청해부대는 Rib보트 3척을 탑재한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과 310명 내외의 병력(UDT 특전요원 포함)과 Lynx헬기 1대 등으로 구성되며 6개월 단위로 아덴만에 파견되어 작전임무를 수행중이다. 청해부대는 대부분 상선 호송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각 호송임무 전/후 시간을 활용하여 연합해군사 CTF-151의 지휘통제 하에 경계구역을 할당받아 해양안보작전(Maritime Security Operation : MSO)을 수행한다. 해양안보작전에 참가할 경우, 청해부대는 연합해군사의 지휘통제를 받게 되므로 국제연합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파견된 각 회원국들이 형성한 다국적군의 일원이 된다. 그러나 연합해군의 성격상 연합해군사의 적극적 전술통제가 아니라 느슨한 작전통제를 받으며, 우리나라 해군의 교전규칙이 연합해군사의 교전 관련 지침보다도 우선한다. 우리나라 청해부대의 주요활동상은 다음과 같다.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작전’과 2011년 3월과 2014년 8월에 리비아에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인접 국가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다. 2015년 4월에는 예멘의 수도 사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예멘에 잔류한 우리 국민과의 연락 유지와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왕건함’에 대한민국 최초로 함상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군과 외교부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선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가나해역 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후 석방된 우리 국민 3명을 나이지리아 라고스항에서 가나 테마항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작전을 실시

50)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제1838호(2008. 10. 7)는 각국의 해군 함정과 군용항공기를 파견해줄 것을 본격적으로 요청(call upon)한 최초의 국제연합안보리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우리나라 정부는 2008년 10월 27일 곧바로 정부합동실사단을 바레인과 지부티로 파견하였고, 2009년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소말리아해역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헌법 규정(제5조 제1항 및 제60조 제2항)201)에 따라 “해군함정 등으로 구성된 310명 이내의 국군부대를 소말리아해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파견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 2009년 1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3월 2일 23시 36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손태기, 앞의 논문, 101쪽.

하였다.⁵¹⁾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작전지침은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14> 청해부대 주요활동(2018년 11월 기준)⁵²⁾

선박호송		안전항해지원		해양안보 작전	해적 퇴치
우리 선박	타국 선박	우리 선박	타국 선박		
499척	1,807척	15,828척	2,922척	612회(1,827일)	21회 / 31척
안전항해지원					
아덴만 작전 (2011년 1월)		선장 및 선원 전원 구출,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 (2011년 3월)		우리 국민 37명을 리비아에서 몰타, 그리스로 철수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 (2014년 8월)		우리 국민 18명, 외국인 86명을 리비아에서 몰타로 철수			
예멘 재외국민 철수작전 (2015년 4월)		우리 국민 6명, 외국인 6명을 예멘에서 오만으로 철수			
가나 피랍선원 호송작전 (2018년 4월)		우리 국민 3명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가나 테마항으로 호송			

51) 국방부, 「국방백서 2018」, 2019, 156쪽.

52) 국방부, 앞의 책, 156쪽.

제4장 기니만 해적과 해적퇴치를 위한 노력

제1절 기니만 개요 및 해적 발생배경

I. 기니만 개요

기니만은 북쪽으로 세네갈에서 남쪽으로는 앙골라에 이르는 6,000km의 해안선을 지녔으며, 이는 소말리아 인근 해안선 길이의 두 배에 달한다. 기니만 연안에는 세네갈,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가봉, 민주콩고공화국, 앙골라를 포함하여 총 19개 국가⁵³⁾가 있다. 기니만은 과거 노예무역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천 만명 이상의 서아프리카인들이 미국, 브라질, 쿠바 등으로 끌려갔다.



[그림-5] 기니만의 위치

53) 세네갈,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카메룬, 적도기니, 가봉, 콩고공화국, 민주콩고공화국, 앙골라, 카보베르데, 상토메 프린시페, 김동석, “아프리카 해상안보 문제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16-05, 외교안보연구원(2017. 1.), 4쪽.

기니만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자랑한다. 이 지역에서는 하루에 500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는데,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적도기니, 가봉이 주요 석유 수출국이며, 최근 가나,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에서도 원유가 발견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산자원도 풍부하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이러한 수산자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많은 원양어선이 기니만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기니만 연안 국가들은 경제발전이 더딘 상태이다.⁵⁴⁾

<표-15> 기니만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및 GDP 중 차지비율(2012년 기준)⁵⁵⁾

구 분	석 유		천연가스		GDP 중 차지비율
	연간 생산량	매장량	연간 생산량	매장량	
코트디부아르	160만 m ³	3억 m ³	17억 m ³	4000억 m ³	GDP : 247억달러 (4.3%)
가나	390만 m ³	2억1000만 m ³	-	3000억 m ³	GDP : 384억달러 (7.5%)
토고	-	7000만 m ³	-	1000억 m ³	GDP : 37억달러 (3.2%)
베냉	-	7000만 m ³	-	1000억 m ³	GDP : 97억달러 (1% 미만)
나이지리아	1억2380만 m ³	50억9000만 m ³	379억 m ³	3조 m ³	GDP : 2440억달러 (41%)
카메룬	330만 m ³	2400만 m ³	3억 m ³	2000억 m ³	GDP : 253억달러 (8.3%)
적도기니	1490만 m ³	3억5000만 m ³	65억 m ³	1200억 m ³	GDP : 177억달러 (89.4%)
가봉	1230만 m ³	14억 m ³	2억 m ³	6000억 m ³	GDP : 18.4억달러 (56.5%)
상토메프린시페	-	1억8000만 m ³	-	1000억 m ³	GDP : 2.7억달러 (3% 미만)

54) 김동석, 앞의 논문, 3~5쪽.

55) Geoinformationsdienst der Bundeswehr, Geopolitische Information, Geopolitische Analyse Golf von Guniea, (Euskirchen : ZGeoBw. 2015), p.10.

많은 국내외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가 기니만 연안국가 해적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주요 국가로 보고 있다. 이는 나이지리아가 기니만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크고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가진 지역내 패권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해적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⁵⁶⁾이 기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황에서 이지역의 핵심국가인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나이지리아의 정식 명칭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이다. 나이지리아의 전체 국경선 길이는 4,047km이다. 동쪽으로는 카메룬(1,690km)과 차드(87km), 북쪽으로는 니제르(1,497km), 서쪽으로는 베냉(773km)과 접경해 있다. 한편 남쪽으로는 대서양의 기니만(Gulf of Guinea)과 맞닿아 있으며,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853km이다. 나이지리아의 국토 면적은 923,773km²이며, 한반도의 약 4.2배 큰 규모이다. 국토 면적의 33.02%(2005년 기준)는 농경지이며, 영해는 12해리로 1978년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2012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총인구는 1억 6480만 명이다. 나이지리아의 수도는 1991년 12월 12일 기존의 수도 라고스(Lagos)에서 이전해 새롭게 자리를 잡은 아부자(Abuja, 185만 명 거주)이다. 나이지리아의 주요 도시는 라고스(1000만 명 거주)를 비롯하여 카노(Kano, 330만 명 거주), 이바단(Ibadan, 276만 명 거주), 카두나(Kaduna, 151만 명 거주) 등이다.

나이지리아는 1900년 이후 영국의 통치를 받았으나 1960년 10월 1일 영국연방으로부터 독립하였고, 그날을 기려 10월 1일이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1960년 10월 7일 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

2011년 기준 나이지리아는 영국연방(Commonwealth of Nations), 국제연합(UN), 아프리카연합(AU)⁵⁷⁾,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WAS)⁵⁸⁾, 세계무역

56) 2019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행위 67건 중 35건이 나이지리아 근해에서 발생하였으며, 최근 10년간 기준(2009~2019)으로도 기니만에서 발생한 해적행위 532건 중 271건이 나이지리아 근해에서 발생하였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13/14/18/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14/15/19/20.

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의 국제기구 회원국에 가입해 있다. 나이지리아와 우리나라는 1980년 2월 22일 정식으로 수교하였다. 나이지리아의 정치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의 연방공화국이며 국회는 양원제를 취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GDP는 3,970억 달러이고, 나이지리아의 1인당 GDP는 2,050달러이다.⁵⁹⁾

II. 해적행위 발생배경

기니만에서 해적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국내분쟁, 식민지배로부터 독립 후 발생한 국경분쟁,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적대처 능력 부족 등 정치·사회적 문제, 둘째, 기니만 국가의 저발전과 가난 같은 경제적 문제이다.

1. 정치·사회적 문제

일부 기니만 연안국가들의 국경분쟁으로 인하여 기니만 국가들의 해적퇴치

57)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은 55개 아프리카 국가들(서사하라 포함)이 2002년 7월 9일 결성한 범아프리카 정부 간 기구이다. 본부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다. 설립목표는 세계무대에서 영동성을 대변하고 아프리카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통합되고 번영하는 평화로운 아프리카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국제연합(UN)이나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아프리카 국가 간 빈곤, 민주화, 여성, 아동, 교육, 전통과 다양성, 인권, 반부패, 농업을 포함한 사회경제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알제리, 앙골라, 부룬디, 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가봉, 리비아,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토고, 튀니지,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서사하라 등 55개 회원국으로 구성됐다. 한·아프리카 재단, 「2019 한눈에 보는 아프리카 개정판」(서울 : 한·아프리카 재단, 2019), 74~78쪽.

58)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는 서아프리카 지역 15개 국가가 결성한 지역경제공동체이다. 1975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서아프리카 15개 나라가 모여 라고스 협정(Treaty of Lagos)을 발표하면서 공식 발족했다. 사무국은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있다. 다른 경제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관세의 철폐, 역외 국가에 대한 공동 관세율의 설정, 지역 내에서 자본과 노동력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국가 간 협력강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에는 코트디부아르,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등 15개 나라가 회원국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한·아프리카 재단, 앞의 책, 84~88쪽.

59) 외교부 홈페이지 : 국가/지역정보, 나이지리아, 검색일 : 2019년 2월 28일.

공조를 위한 신뢰관계가 두텁게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국내분쟁들로 인한 해상안보 체계(해군, 해양경찰, 해양법 등) 구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파생된 기니만 연안국가들의 불충분한 해적대처 능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적을 대응할 수 없고, 이에 해적들은 기니만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1) 국경분쟁

바카시 반도를 둘러싼 나이지리아와 카메룬과의 해양국경분쟁은 기니만 지역의 해적활동에 촉매제가 되었다. 바카시 분쟁은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두 나라가 바카시 반도의 영유권을 놓고 수십 년간 갈등과 반목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림-6] 바카시 반도 위치⁶⁰⁾

기니만 동쪽 끝에 자리 잡은 1천km² 크기의 바카시 반도는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또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으로서 영국과 독일이 서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를 분할할 때 양국 간 국경을 해안선까지 연장하지 않은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다. 이는 1981년 두 나라를 전쟁 직전으로 몰아가기도 했으며, 1993년 12월 나이지리아가 바카시 반도에 병력을 배치하였

60) <https://www.segye.com/newsView/20080814002496>, 검색일 : 2020년 5월 25일.

다.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바카시 반도에 병력을 배치하자 카메룬 측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혈사태로 전환되었다. 카메룬이 1994년 3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문제를 제소하면서 바카시 반도 영유권 분쟁은 양국 간의 법적 논쟁으로 발전되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인 2002년 10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과 독일이 1913년 체결한 조약에 근거하여 카메룬의 손을 들어주었다. 뒤이어 2006년 6월에는 코피아난 전 국제연합사무총장의 중재로 올루세군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 당시 나이지리아 대통령)와 폴 비야(Paul Biya: 카메룬 대통령)가 뉴욕에서 그린트리 협정(Greentree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바카시 반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두 국가는 200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2006년 양국이 체결한 그린트리 협정에 따라, 나이지리아는 바카시 반도를 카메룬에 양도하고 카메룬은 나이지리아의 해양국경 관련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주었다. 이에 나이지리아는 공동 국경의 분계선 설정과정을 2009년 말 이내에 완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나이지리아가 바카시 반도를 실제로 카메룬에 되돌려주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었다. 거주민 대부분이 나이지리아 출신인 바카시 반도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데다 바카시 반도 반환을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지리아 의회는 그린트리 협정 결과에 대해 불충분하게 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11월 17일 그린트리 협정이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린트리 협정의 이행에 계속 주력하였다. 2007년 6월과 7월, 카메룬의 공직자와 군사기지가 바카시 지역의 분리를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다수가 사망하게 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으나, 8월에 나이지리아 상원이 영토를 카메룬에게 인도할 것을 승인하였다. 다음날, 나이지리아는 공식적으로 통치권을 카메룬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2007년 9월 바카시 반도에 있던 30만 명의 나이지리아인들 중 3분의 1인 10만여 명이 나이지리아로 돌아갔다. 나이지리아 아콰 이봄(Akwa Ibom) 주에 일시적인 거처에 머물렀다. 2008년 나이지리아가 카메룬에 바카시 반도를 완전히 이양하였다.⁶¹⁾

이외에도 기니만 연안의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국경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도 해양경계선 확정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 갈등은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아이보리 해안(Ivory coast)에서 대형유정이 발견되었고, 그러자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서로 이 수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해안경계선은 가나에 유리하였으므로, 가나는 1950년대부터 유지하던 기존의 해안선이 묵시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반면 코트디부아르는 그러한 경계선은 어부들이 편의상 나눈 것일 뿐 법적 효과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17년 9월 23일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기존 경계선의 성격이 임의적이라고 규정하였고 등거리 원칙(Equidistance principle)을 적용해 새로운 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여 새롭게 경계선을 확정하였지만 과거의 경계선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⁶²⁾

기니만을 개발하려는 나라에서 석유자원을 탐사하고, 새로운 유전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에서 석유자원을 둘러싼 국경분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분쟁이 장기간 지속하게 될 경우 분쟁 당사국간의 신뢰는 손상될 것이다. 기니만 근해 해적퇴치를 위해 공조해야 하는 국가들간에 신뢰를 잃고 해적퇴치를 위한 공조를 소홀히 할 경우 기니만에서의 해적퇴치는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고, 이 해역에서 해적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2) 국내 분쟁

기니만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국내분쟁 역시 기니만 해적행위 번성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남부 니제르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는 니제르 델타 토착종족(이자우족, 니제르 델타 인민지원군, 니제르 델타 해방운동)과 나이지리아 중앙정부이다. 니제르 델타는 그 길이가 190km에 달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61) 출처 :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검색일 : 2019년 3월 1일.

6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324>, 검색일 : 2019년 3월 1일.

큰 델타이다.



[그림-7] 니제르 델타 위치

이 땅에서 원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면서 평화롭게 살았으나, 1957년 니제르 델타에서 원유가 발견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으로 1일 원유 생산 능력이 300만 배럴에 달한다. 확인된 매장량만 362억 배럴이며 현재도 탐사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매장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니제르 델타의 원유가 나이지리아의 경제와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다. 나이지리아는 한때, 하루 280만 배럴을 생산하여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으로의 지위를 가지기도 했으나, 카리스마와 통치 역량을 지닌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막대한 부가 부정부패를 일으키면서 지도층간, 국민간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7년 “우리 땅에서 얻어지는 원유 수입의 배분에서 소외된 인민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고 억압에서 해방한다”는 구호를 들고 ‘니제르 델타 해방운동(Movement of

Emancipation of Niger Delta : MEND, 이하 MEND)'이 나타났다. 원유 소득 분배와 관련하여 이자우족이 구성한 다양한 반군 단체들과 중앙정부 간의 분쟁은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MEND는 그 동안 원유 관련 시설에 빈번한 공격을 가해 왔다. 이들이 걸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인권이나 인간해방과 같이 고매한 것이나, 실제로 무장단체들은 자신들의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외국인 납치와 시설파괴 등을 일삼고 있다. 이들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강탈한 원유와 석유제품을 암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너무 엄청나 이들의 정치활동자금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MEND는 국가 시설의 파괴나 외국인 납치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인근 해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피랍 살인, 선박 피랍 등의 해적행위를 하고 있다.⁶³⁾

나이지리아 분쟁 뿐만 아니라, 기니만 연안국가에서는 1/2차 코트디부아르 내전, 가봉/토고/가나 분쟁 등 국내분쟁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가기능의 상실로 이어져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적대처를 불가능하게 했고, 해적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3)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적대처 능력 부족

기니만 연안국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내전, 정치적 억압, 가난, 질병 등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⁶⁴⁾을 해결하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하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문제 등에 이는 해상안보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였다. 이는 해군력 증강, 해상경계 방어선 구축 등 해상안보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제대로 훈련받은 해군, 해양경찰과 해적퇴치에 필요한 장비와 무기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니만 국가들의 현행법이 해적행위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을 다루는데 부적합하다. 해

63) 출처 :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검색일 : 2019년 3월 1일.

64) 나이지리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보코하람' 과 테러와의 전쟁 중이며, 민주콩고공화국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아프리카 8개국이 참가하여 '아프리카의 제1차 세계대전' 이라 불리는 내전을 겪었다. 또한 기니, 콩고 등 서아리프카 지역은 최근까지 에볼라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양 관련법이 구시대적이라 정부 당국은 해적활동, 인신매매, 마약밀매 등의 복잡한 해상범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니만 국가들은 해적관련 국제법들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⁶⁵⁾ 해적대응을 위한 조직 및 사법체계의 미흡과 더불어 그나마 있는 군, 경찰, 항구관리자들의 부패 역시 해적활동의 한 원인이다. 가난한 해상안보 관계자들은 해적활동억제 및 퇴치임무는 커녕 오히려 해적들의 원유밀매와 인질납치에 가담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 또한 일부 부패한 정치인들은 원유밀매를 하는 조직과 연계하여 이 조직을 비호하고 대가로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니만 해적들은 해상안보 관계자(해군, 해양경찰 등)를 두려워하지 않고, 활발하게 해적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기니만 해역의 해적활동 번성의 주요 원인이다.

2. 경제적 문제

기니만 국가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살펴볼 때, 적도기니, 가봉만이 10,000달러를 넘고 있으며, 앙골라는 8,200달러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채 5,000달러를 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00달러 이하이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만성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적행위는 위협을 동반하지만, 고수익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행위이다.

1) 지하자원 소득 재분배의 불균형

기니만 국가들은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원유수입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이지리아의 니제르 델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원유의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나이지리아 중앙정부 지도자들과 거대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원유개발과 수출로 발생한 이익을 독점하였

65) 김동석, 앞의 논문, 16쪽.

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영국 식민지 지배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나이지리아는 영국정부가 식민지배 당시 제정한 석유 개발에 관한 법⁶⁶⁾을 계승하였다. 그리하여 나이지리아 영토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은 연방정부의 소유라고 명시한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 정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외부 종족⁶⁷⁾들이 지하자원개발을 주도하면서, 니제르 델타 지역의 토착 종족들은 자원개발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러한 외부 종족들은 지속적인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자신과 같은 동족과, 정치참여가 활발한 대도시 거주주민들의 지지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지하자원의 개발로 얻은 수익을 토착 종족이 아닌, 자신의 같은 동족과 대도시 거주주민에게 우선 분배하였다. 이러한 불공정 배분으로 인해 니제르 델타 지역의 토착 종족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토착 종족의 청년층은 위험하지만 고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해적활동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나이지리아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와 같은 산유국인 적도기니, 앙골라, 가봉도 마찬가지이다. 이 세 나라는 원유생산으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은 상당히 높지만, 빈부격차가 상당히 크다. 결국 원유생산으로 인한 이익은 고위층이 독점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만성적인 가난에 시달린다고 볼 수 있다.

2.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손실⁶⁸⁾

기니만 해역은 카나리아 해류(Canary Current)와 기니 해류(Guinea Current)가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얇은 바닷물이 밀려나고 그 아래쪽에 있던

66) 영국은 니제르 델타 지역을 포함한 나이지리아 식민지의 경제적 착취를 위해 1914년에 영국 국왕이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다고 명시한 광물법령 (Minerals Ordinance) 그리고 1956년에 외국 석유회사가 유정에서 석유수출 터미널까지 송유관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석유수송법률(Oil Pipeline Act)을 제정하였다(Fidelis and Edoumiekumo 2011; Ejiroghene 2012).

67) 중앙정부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종족은 하우스-풀라니(Hausa-Fulani), 요루바(Yoruba), 이보(Igbo) 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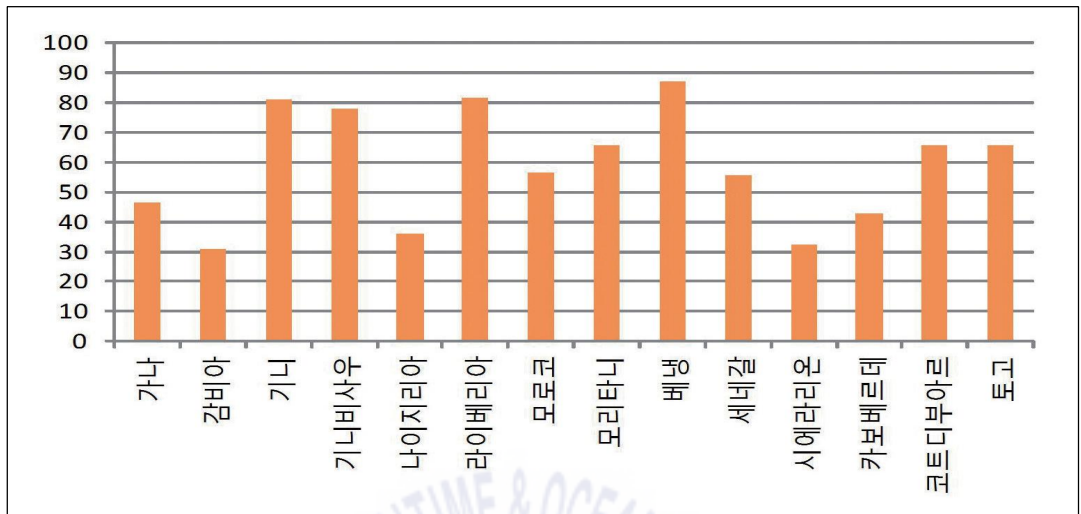
68) 김동석, “서아프리카 지역 불법어업활동 분석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3, 외교안보연구원(2018. 4)의 자료를 저자가 논문양식으로 편집하였다.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심해의 풍부한 영양물질이 올라와 풍부한 어장이 조성되어 수산자원⁶⁹⁾이 풍부하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외국 원양어선들이 서아프리카 어장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 IUU) 조업⁷⁰⁾을 통해 물고기를 남획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어장의 총 어획량의 절반 이상이 IUU 조업활동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IUU 조업으로 잡힌 수산물의 가치는 8억에서 16억 달러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서아프리카 어장에서 외국원양어선에 의한 IUU 조업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아프리카 국가 전체의 어획량에서 IUU 조업의 비중은 최소 43%(카보베르데)에서 최대 81.5%(라이베리아)에 이르고 있고. 또한 외국원양어선의 IUU 조업활동으로 인해 서아프리카 어장의 수산자원이 지난 30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며, 이는 서아프리카 연안국들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모리타니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는 해안선 국가들은 IUU 조업활동으로 인해 연간 최소 13억 달러에서 최대 23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 세네갈은 2012년 3억달러의 손실은 입었는데, 이는 전체 GDP의 2%에 해당한다. 시에라리온 역시 불법어업활동으로 인해 연간 2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

69) 상어, 도미, 참치, 갈치, 바다 송어, 민어, 조기, 참돔, 청새치, 황새치, 문어 등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잡힌다.

70)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불법(illegal) 어업은 (1)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그 국가의 관할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에 의하여 행해지는 활동, (2) 관련 지역수산기구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행하지만 그 기구에 의해 채택되고 그 국가를 구속하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지는 활동, (3) 국내 법률을 위반한 활동 또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대한 협력국이 약속한 의무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행동이다. 비보고(unreported) 어업은 (1) 국내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국가의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를 하는 어업활동, (2) 관련 지역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그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하는 어업활동이다. 비규제(unregulated) 어업은 (1)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적용수역에서 무국적어선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또는 그 기구의 비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조업실체에 의하여 그 기구의 보존관리 조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 (2) 적용가능한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또는 어족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법상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불일치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이다, 김현정, "IUU 어업규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국내적 함의", 「국제법 정책연구」, 국립외교원(2016. 6.), 42-43쪽.



[그림-8] 서아프리카 국가 전체 어획량 중 IUU조업 비중 (%)⁷¹⁾

소규모 영세조업(artisanal fishing)은 서아프리카 주민들의 주요 생계기반이다. 서아프리카에서 약 7백만 명이 수산업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네갈의 경우 전체 노동인구의 약 2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 탓에 많은 농민들이 어촌으로 몰려들고 있다. 외국원양어선의 IUU 조업활동은 서아프리카 영세조업 기반을 붕괴시켜, 수백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IUU 조업으로 인해 모리타니, 세네갈,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시에라리온 해안에서 30만 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놓이고 있으며, IUU 조업으로 인해 서아프리카 어장의 조업량이 줄어들면서 연안국들의 수산물 수출 이익이 감소하였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조업 원양어선은 서아프리카 연안국에서 멀리 떨어진 항구에 정박하여 잡은 물고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안국의 물고기에 부과하는 세금 뿐만 아니라 입항료, 항구 서비스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 일례로 IUU 조업은 세네갈에서 원양어선의 입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약 3억 1,200만 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IUU 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가들은 해적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기니만 연

71) 김동석, “서아프리카 지역 불법어업활동 분석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3, 외교안보연구원(2018. 4), 5쪽.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원양어선의 IUU 조업으로 인한 경제 사정 악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해적활동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이는 기니만 해역 해적활동이 유지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제2절 해적조직의 구성 및 해적행위의 특징

I. 해적조직의 구성

기니만 해적의 경우 나이지리아와 해적을 제외하고는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씨족 단위의 구성, 하부 조직원, 실행단체, 지원단체 등의 조직구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기니만 해적행위는 정치·사회적 혼란을 틈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해적은 니제르 델타 원주민으로 구성된 잘 조직한 집단이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해적은 나이지리아의 오일 마피아⁷²⁾와 연관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오일 마피아는 중앙 정치인들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중앙 정치인들은 이러한 오일 마피아의 편의를 봐주면서 뇌물 등 금전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나이지리아 오일 마피아는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지역의 원유 시추시설의 배관에 구멍을 내어 유류를 500톤에서 2,500톤 정도의 부선에 옮겨 적재한 후 니제르 델타의 환적장소에서 대형 유조선으로 환적하거나, 직접 선박에 유류를 선적하여 절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요 절도범은 해적이다. 이 해적들은 정유된 석유를 옮기는 선박을 피랍하여 자신의 소형 유조선으로 기름을 옮기거나, 또는 직접 니제르 델타 연안으로 옮겨 정제된 석유를 환적한다. 니제르 델타 지역은 이러한 유류 해상탈취의 가장 이상적인 장소이다. 니제르 델타는 복잡한 해안선을

72) 나이지리아 오일마피아는 나이지리아의 원유시설 및 해적들로부터 수집한 기름을 니제르 델타 연안에서 보관 또는 양질의 원유로 가공하여, 나이지리아 내부 또는 나이지리아 인접 국가에 팔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팔리는 유류의 약 10%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팔려지고 있다. Geoinformationsdienst der Bundeswehr, Geopolitische Information, Geopolitische Analyse Golf von Guniea, (Euskirchen : ZGeoBw. 2015), p.21.

가지고 있으며 해상안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관도 없다. 또한 해적들은 확실한 해적기지가 있고, 지역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니제르 델타에는 1,200여명의 유조선 전문해적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해적들은 오일 마피아가 유류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⁷³⁾

II. 해적행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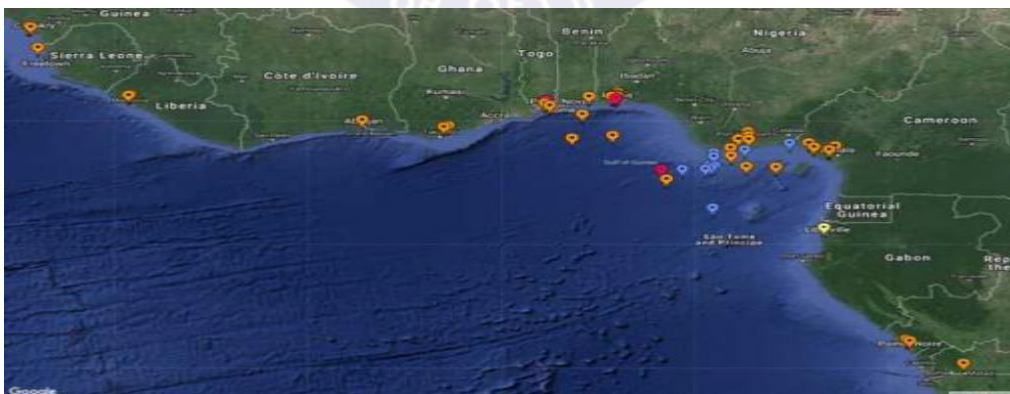
기니만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과 같이 인질을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조선을 피랍 후에 원유를 훔쳐 암시장에 파는 것이다. 2018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선원납치 피해(83명)의 94%(78명), 선박인질피해(141명)의 92.2%(130명)가 기니만 해역인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유조선을 피랍하여 석유를 훔치고 오일 마피아와 연계하여 암시장에 되파는 것도 기니만 해적행위의 주요형태이다. 이러한 해적행위의 사례로는 2013년 2월 룩셈부르크 국적 유조선 가스고그 네호가 중무장한 나이지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다. 이후 해적은 유조선을 석유 절도를 위해 나이지리아 연안으로 끌고 갔으며, 선원 17명을 인질로 잡았다. 이후 승조원은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 8월에는 나이지리아 무장해적이 세인트키츠섬 국적 유조선 노트레호(17,000t)을 나이지리아 연안으로 끌고 갔으며, 그곳에서 석유를 절도했다.⁷⁴⁾ 이러한 원유절도로 인한 피해액의 산정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기니만 연안국 중 주요 원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를 기준으로 매년 30 ~ 80억 달러 정도의 원유 손실(해상수출 원유 장부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⁷⁵⁾ 이러한 대규모 원유 절도는 정교한 장비와 기술 그리고 항해, 상거래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피랍된 유조선을 운

73) Ibid, p.20.

74) Dieter Stockfisch, "Seeraeuber im Golf von Guinea", *Kameraden, Unabhaengige Zeitschrift fuer alte und junge Soldaten 59th*, Arbeitsgemeinschaft fuer Kameradenwerke und Traditionsverbaende., 2014, p.10.

75) Moritz Brake(Hrsg.) *Maritime Sicherheit-Moderne Piraterie*,(Frankfurt am Main : Peterlang, 2015), p.243.

항할 수 있는 능력, 원유 저장탱크의 복잡한 배관구조를 이해하는 능력, 훔친 원유를 암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해적들은 오일 마피아와 협력하여 해적행위를 하고 있다. 둘째, 많은 해적행위들이 기니만 연안국가의 연안이나, 영해 근해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해적행위 후 영해로 도주할 경우 타국 군함, 해양경찰들의 검거가 불가하다는 국제법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니만 연안 인근 항구나 연안에 정박해 있는 선박을 공격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콩고 공화국의 푸앵트리아항(Pointre-Noire)이나 나이지리아의 라고스(Lagos)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셋째, 보고되지 않는 해적행위가 다수 발생한다.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적통계자료를 종합하여 발표할 때는 상선이나 선박회사에서 보고된 해적자료를 토대로 한다. 그러나 기니만에서 보고되지 않은 해적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보고된 건수는 보고된 건수의 50 ~ 8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되지 않은 해적건수가 많은 이유는 상선이나 선박회사들이 국제해사기구에 보고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니만 연안에서 많은 해적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니만 연안을 통과하는 항로가 그 만큼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고, 해적행위 발생보고가 많아져 수송의 위험성이 증가하면, 해상운송 시장에서 많은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⁷⁶⁾



[그림-9] 2019년 기니만 해적사고 발생 현황⁷⁷⁾

76) Ibid, p.36.

제3절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노력

I.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기니만 해적활동의 문제는 기니만 연안국가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장되어진다. 기니만 연안국가 중 나이지리아, 앙골라는 세계 10대 원유수출국이며, 가봉, 적도기니, 콩고 공화국도 1일 2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유조선을 노려 선원납치 및 유류를 암시장에 재판매하는 등 기니만에서 발생하는 유조선 대상 해적피해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해적행위가 발생하는 대다수 국가들이 유럽, 대서양 국가들이다. 그래서 국제연합, 미국, 프랑스 등은 기니만 해적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1. 지역사회의 노력

기니만 해역에 해적활동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은 해적퇴치를 위한 공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기니만 연안 국가들의 기니만 위원회(GGC: Gulf of Guinea Comission)⁷⁸⁾, 중부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⁷⁹⁾,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는 기니만 해적문제 해결을 위

77) 해양수산부, 「20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20, 14쪽.

78) 기니만 위원회(GGC)는 회원국 간의 평화안보, 원유와 천연자원 관리, 상품과 인력의 위원회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 등의 정책 조율 등을 목표로 1999년 설립되었다. 회원국은 앙골라, 카메룬, 콩고공화국, 민주콩고공화국, 가봉, 적도기니, 나이지리아, 상토메프린시페이다(기관단체사전 : 기니만 위원회, 검색일 : 2019년 2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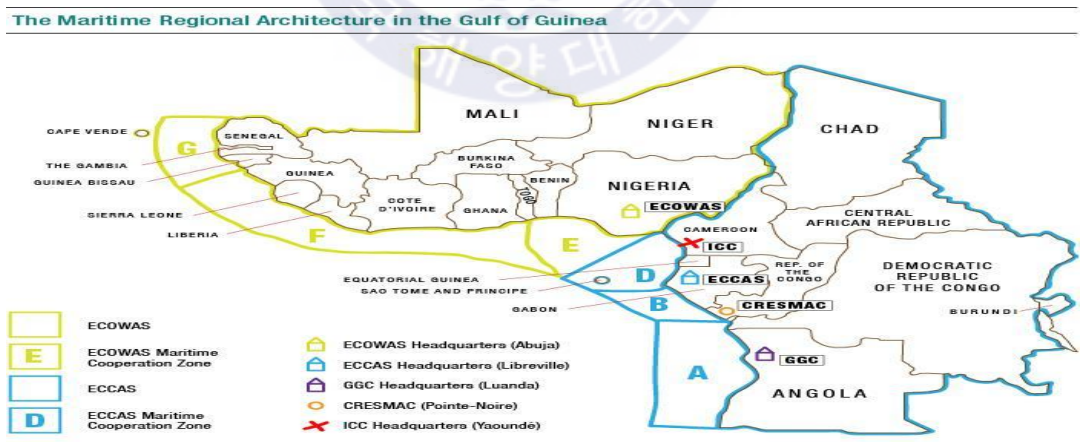
79) 중부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ECCAS)는 1983년에 10월 18일 창설된 중앙아프리카 11개국의 지역협력체이다. 설립 당시는 경제통합을 통하여 단일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2년 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평화안보구축으로 변경하였다. 회원국은 앙골라,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민주콩고공화국, 적도기니, 가봉, 상토메프린시페, 르완다이다. 한·아프리카 재단, 앞의 책, 90쪽.

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카메룬 수도 야운데(Yaunde Summit)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연합(AU)도 최근 기니만 상황에 관심을 가져, 2016년 10월 로메 정상회담(Lome Summit)을 개최하였고, 해적퇴치 문제를 논의 하였다.

1) 서아프리카 지역 공동체들의 노력

기니만 위원회의 대부분 회원국이 원유생산국이라 이들은 과거 주로 원유와 관련된 해상안보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해적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적문제는 이 지역공동체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해적퇴치를 위한 공조강화 및 대책을 제안하였지만, 이것을 제대로 실행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기니만 지역의 경제강국인 나이지리아와 앙골라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접국가들의 두려움과 앞에서 언급한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의 영토분쟁(바카시 반도) 등이 공조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11개 회원국 중 7개 회원국이 기니만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중부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는 2009년 10월 기니만 해상위기를 논의할 안보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중부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의 안보전략은 정보공유와 관리, 공동해상감시, 해양문제 관련 정책 협력, 지역 해상세금 도입, 무기와 기타 장비의 공동 구입, 해상안보회의 제도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부아프리카 해상안보 지역관리센터(CRESMAC: Regionl Coodination Centre for the Maritime Security of Central Africa)를 콩고공화국의 항구도시인 푸앵트누아르(Pointe-Noire)에 설치하였다. 중부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는 회원국들의 해역을 A,B,D 구역(Zone)으로 나누었다. A구역은 앙골라, 민주콩고공화국, B구역은 콩고공화국, D구역은 카메룬, 적도기니, 상토메프린시페를 포함한다, 가봉의 구역은 B와 D영역에 걸쳐 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해역인 D구역은 회원국들이 해상공동순찰 및 정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2011년 회원국 베냉에서의 해적활동이 증가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회원국 간의 정보공유, 해상정책 조율, 통합 해상안보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아

프리카 경제공동체가 주도하는 해상안보에 관한 협력은 지역 내 강국인 나이지리아의 패권 확대에 대한 우려 및 자기 영해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자국에서 해결하려는 주권유지 경향으로 인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영어권 국가들과 불어권 국가들 간의 언어 차이, 종족간의 문화차이 등도 협력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기니만 위원회, 중부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2013년 해상안보 관련 야운데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 회의 참여국들은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에 본부를 둔 중서부 아프리카 해상안보 조정센터(Coordination Centre on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for Central and West Africa) 설치, 해적활동, 선박 무장강도, 기타 불법적 활동의 방지와 진압에 관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야운데 정상회담 이후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중부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의 해역구분 모델로 적용하여 [그림-10]과 같이 회원국들의 영해를 3개 구역(Zone E,F,G)으로 구분하였다. 구역 E는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구역 F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구역 G는 세네갈, 감비아, 기니비사우를 포함한다. 각 구역에서는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국가가 해적활동과 해상에서 벌어지는 기타 불법활동 퇴치를 주도하고 있다.⁸⁰⁾



[그림-10] 기니만 해양구역 구분⁸¹⁾

80) 김동석, 앞의 논문, 21~23쪽.

2) 아프리카 연합(AU)의 노력

아프리카 연합은 2014년 통합해상전략(Integrated Maritime Strategy 또는 2050 AIM)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은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해적, 불법어획, 테러와 같은 안보문제들과 해상에서의 경제적인 기회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가난, 부패 등과 같은 해적문제의 근본원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해상전략의 채택은 기니만 해적문제를 지역의 관심사로 만들었다. 2016년 10월 아프리카 연합은 해상안보, 안보발전에 관한 임시 정상회의(Extraordinary Summit on Maritime Security, Safety and Development)를 토고의 수도인 로메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테러리즘, 해적, 무장강도, 마약, 밀매, 인신매매, 불법어획의 방지를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 해상안보, 안전, 발전 헌장(Charter on Maritime Security, Safety and Development)에 서명하였다.⁸²⁾

2.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연합은 기니만의 해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번의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첫 번째 결의안은 2011년 8월 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한 결의안 제2018호이며, 유엔은 기니만 해역에서의 무장강도에 대한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니만 연안국가들과 서구 아프리카 기구들의 해적퇴치활동(공동해상정찰, 해적퇴치를 위한 법령 개정 및 규정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상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해상안보의 역량강화를 위한 일부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기여 및 지원을 독려했다. 두 번째 결의안은 2012년 2월 29일 결의안 제2039호이며, 첫 번째 결의안과 내용은 유사하며, 국제사회의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적퇴치를 위한 해상안보 역량강화 및 해상안

81) 김동석, “아프리카 해상안보 문제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16-05, 외교안보연구소 (2017. 1.), 22쪽.

82) 김동석, 앞의 논문, 23~24쪽.

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의안에 의거하여 국제연합과 서구국가들은 기니만 연안 해적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두 산하 기구인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 국제연합 서아프리카사무소(UNOWA: United Nations Office for West Africa)는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니만 위원회, 중부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가 공동의 해적퇴치 작전을 발전시키는 것과 해적퇴치를 위한 역량제고, 충분한 자원 동원, 정상회의 조직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니만 연안국가 정부의 해적 처벌 강화를 위한 국내법 개정, 국제 해양법 집행 강화 등 사법적 영역개혁을 원하고 있다. 많은 서구국가들은 기니만 연안 국가들의 해상방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 해군은 나이지리아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나이지리아 해군을 훈련시켜주고 있다. 또한 토고와 베냉 해군이 참여하는 핫 수퍼트 작전(Operation Hot Pursuit)과 같은 해상안보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미국은 기니만 국가들의 경찰, 수색작전 등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오방게임 훈련(Exercise Obangame Express)이라는 연례 해군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아프리카 23개국이 오방게임 훈련에 참가하였다. 프랑스는 기니만 연안의 불어권 국가들과 양자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2011년 베냉, 토고, 가나의 해상안보역량 강화 3개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는 나중에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기니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0년대부터 기니만 국가들의 해상안보 향상을 위해 코랭브르 작전(Operation Corymbre)을 전개하고 있다.⁸³⁾

II.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우리나라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OICA)⁸⁴⁾를 통하여 나이지리아 등 기니만 연안국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83) 김동석, 앞의 논문, 24~25쪽.

84) KOICA는 1991년 4월 설립된 우리나라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지원 분야의 대부분이 농림수산, 교육, 보건의료, 직업교육 등 인도적 지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해적활동의 근본 원인인 가난, 차별, 소외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표-16> 기니만 연안국가 대외무상원조실적(2018년 기준)⁸⁵⁾
 <단위 : 달러>

국 가	총 지원액(1991~2018)	국 가	총 지원액(1991~2018)
세네갈	67,347,975	나이지리아	42,872,450
감비아	2,921,700	카메룬	43,114,375
기니바사우	1,008,432	적도기니	992,505
기니	3,555,088	가봉	1,722,499
시에라리온	3,648,312	콩고공화국	3,709,751
라이베리아	3,154,613	민주콩고공화국	73,771,402
코트디부아르	30,189,580	앙골라	14,579,393
가나	64,581,019	카보베르데	540,293
토고	2,853,710	상토메프린시페	412,787
베냉	5,380,216	-	-

이외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기니만 해적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선박들에게 “기니만 해안으로부터 200마일 이상 거리를 두고 항해하는 등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우리나라 선박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적퇴치와 직접 관련된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상안보 역량강화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부의 조치사항은 현재까지 없으며, 기니만 연안에서 우리나라 선박의 피랍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국가와 해적퇴치와 관련된 정보공유 등 간헐적인 협동만을 하고 있다.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 「2018 KOICA 연보」, 2019. 114쪽.

85) KOICA 통계조회서비스, 검색일 : 2020년 5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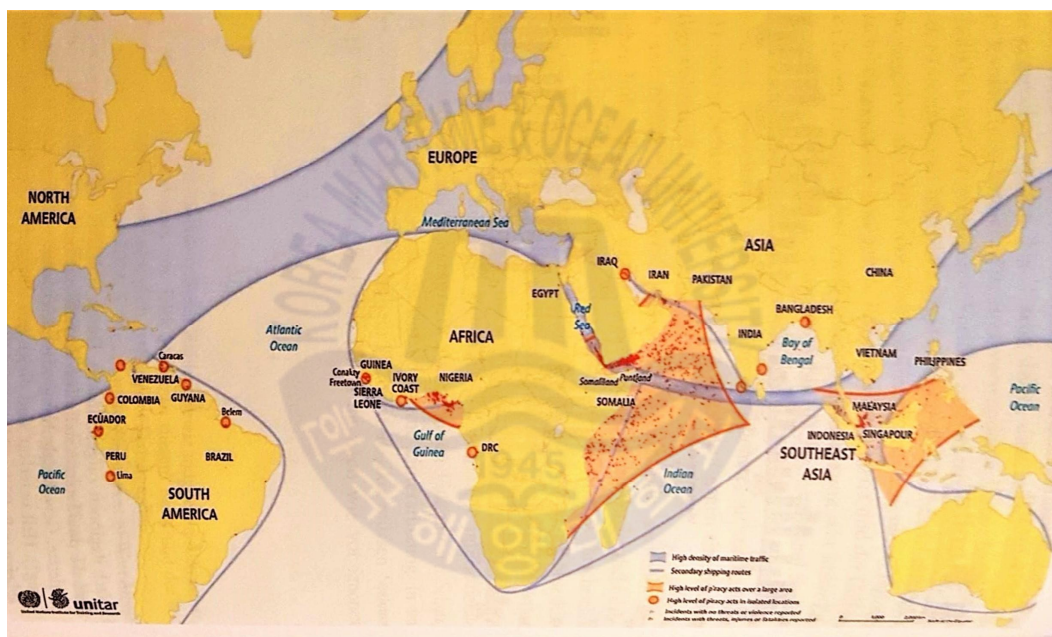
제5장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3, 4장에서 알아본 소말리아 해역과 기니만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를 비교하면 <표-1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17> 소말리아와 기니만 해적행위 비교 요약

구 분	소말리아	기니만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정한 정치·사회구조 • 심각한 경제난 • 해적행위에 유리한 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정한 정치·사회구조 • 심각한 경제난
조직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주요세력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적-지역주민-예비조직원- 지역군벌-이슬람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지리아 해적 외 조직구성 밝혀진 것 없음. * 나이지리아 : 해적-지역주민-오일마피아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적의 조직화 및 기업화 • 해적행위의 대담성 및 흉포화 • 활동해역 확장 (아덴만~홍해~오만근해) • 다양한 공격전술 • 해적행위의 지능화 • 범죄조직 및 테러조직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질납치와 유류절도 • 발생해역이 기니만 연안국가 영해 또는 연안 • 미 보고된 해적건수가 많음.
국제사회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합안보리/국제해사기구/소말리아 해적퇴치 그룹 등 국제기구의 노력 • 군사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해군사 CTF-151 - 유럽연합 CTF-465 - 이외 중국/러시아 등 개별호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 등으로 해적퇴치 노력을 촉구 중이나, 국제연합보다 지역사회가 해적퇴치를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 중 • 해양안보체계 확립을 위한 서구권 국가의 교육 및 훈련지원
우리나라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호송국가 인도와 MOU 체결 등 통행선박에 대한 대응책 강구 시행 • 소말리아 경제원조 등 국제사회의 지원 적극 동참 • 청해부대 파견(2009.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니만 연안국가 지원

소말리아와 기니만 해역 해적행위를 비교·분석해보면 두 해역의 해적행위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이라고 생각하며, 이 차이가 최근 해적행위 발생현황에 극명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이후 20여척의 다국적 해군이 해적퇴치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 해군은 없다. 이러한 차이는 기니만과 아덴만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11] 주요 해상교통로와 해적행위 및 해상강도 발생해역(2006~2013)⁸⁶⁾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덴만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략물자의 중요 수송로로 우리나라 전체물동량의 29%를 차지 할 정도로 중요한 해상교통로⁸⁷⁾이지만 기니만은 우리나라의 많은 교역품이 이동하는 해상교통로가 아니다.⁸⁸⁾ 하지만, 현재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이러한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을

86) Moritz Brake(Hrsg.), op. cit., p.38.

87) 국방부, 「국방백서 2018」, 2019. 155쪽.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기니만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관계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자원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가봉, 앙골라, 적도기니 등은 중요한 경제파트너가 될 수 있다. 현재 이들 국가로부터 원유 수입량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등 중동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적인 원유확보를 위한 원유 수입국의 다변화 차원에서 아프리카 산유국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또한, 가나,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등 일부 기니만 연안국가들의 경제가 지속성장 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때 기니만 연안국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교역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니만 해역에서 창궐하고 있는 해적퇴치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기여한다면 미래 우리나라와 기니만 연안국가간 교역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니만에서 창궐하고 있는 해적을 퇴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를 검토하였으며, 3가지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제1절 국내기업의 지역상생을 위한 기니만 지역 투자 활성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기니만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관계의 여지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일부가 벌써 기니만 국가에 진출하여 투자(나이지리아 대우, 현대 등, 코트디부아르 LG 전자, 가나 삼성전자, 한전 등)를 하고 있고, 서아프리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을 코트라 주관으로 실시하는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외국 원유 대기업의 사례⁸⁹⁾를 참고하여 너무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말

88)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518,599백만 달러이고 우리나라 총 수입액은 436,131백만 달러이다. 기니만 연안국가 19개국 대상 총 수출액은 5,217백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3,360백만 달러이다. 이를 계산해보면 기니만 연안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수·출입액은 우리나라 총 수·출입액의 1%에 불과하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가의 지역별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rProdmpExpList.screen>

89) 나이지리아 중앙정부 지도자들과 거대 다국적 원유회사들이 원유개발과 수출로 발생한 이익을 독점하여 토착민에게 공정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착민들의 만성적 가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나이지리아 근해 해적 창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근로자들의 해적에 대한 안전보장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니만 해적활동 감소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상생의 예로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지역의 포트 코트 (Port Hartcourt), 바엘사 주, 델타 주 마을에 우물, 학교 등의 건설을 지원하고, 태양광 가로등 건설과 같은 지역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다. 또한 LNG선을 수주한 현대중공업은 나이지리아 연수생 70명에게 선박건조 기술교육을 하였다.

제2절 국제사회 노력 적극 동참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해 국제사회는 소말리아 해적퇴치와 달리 회원국에게 군사적 대응보다는 기니만 연안국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도움 및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동참하여 우리나라도 기니만 국가에 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적행위가 주로 창궐하는 지역(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지역)에 대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원조(직업교육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조를 통해 기니만 연안국가들의 경제수준을 올려, 해적행위가 더 이상 매력적인 경제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해적문제의 근본문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에 접근하는 좋은 해결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최빈국에서 정상국가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이러한 원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정상국가가 되었듯 기니만 연안국가들이 자기 나라에서 발생한 문제, 특히 해적문제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만이라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여 기니만 연안국가에 대한 직접적 원조를 지속해야만 한다. 반기문 전 국제연합 사무총장도 2019년 7월 3일 아프리카 새 시대포럼의 세미나 초청강연자로 나와서 ‘아프리카의 발전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의제 발표시 “아마 북한에 관련된 문제라면

몇십조원이 내일 바로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라며 한국정부의 아프리카의 원조부족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2015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서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본은 이미 20여년전부터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⁹⁰⁾에서 35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다”며 “한국은 전 세계에 하는 경제지원이 10억 달러가 안된다”고 말하며 한국의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⁹¹⁾ 이렇듯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원조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원조를 늘려나가면서 국제적인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구에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거 2007년 11월 국제해사기구 정책결정에서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결의서’를 채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처럼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사국인 우리나라가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수 있다. 많은 유럽국가의 국제해사기구 이사국들은 기니만 해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유럽의 많은 원유자원이 기니만 연안국가를 통해 수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사국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기니만 해적과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사회,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언급하면서 기니만 해적을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기니만 해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니만 해적에 대한 국제기구의 강한 조치(추가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시행 등)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해상안보체계 구축 지원

90) 1993년 10월 일본 정부가 제안하여 국제연합기구(OSACAL, UNDP) 및 아프리카를 위한 지구 연합(GCA)이 공동으로 도쿄에서 개최한 회의를 말한다. 냉전 후 국제사회의 중요과제인 아프리카 개발을 협의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48개국, 원조공여국 13개국, 10개의 국제기구, NGO가 참가하였다. 동 회의는 폐막시 “도쿄선언”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과 아프리카 국가의 자조노력을 촉구하였으며 TICAD의 기본이념은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신개발전략에 반영되었다.(국제개발협력용어집: 아프리카개발회의, 검색일 : 2020년 1월 7일).

91) 『동아일보』, 2019년 7월 3일자.

셋째,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상안보체계 구축 지원이다. 기니만 국가들의 해상안보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와 서구권 국가의 노력에 동조하여 우리나라도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상안보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니만 해적은 소말리아 해적과 달리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이 어렵다. 그 이유로는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에서 소말리아와 같이 적극적인 해적퇴치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기니만 연안국가의 영해까지 해적선 추적행위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적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기니만 연안이나 도주가 용이한 영해 근처에서 해적행위를 주도하고 있다. 국제법상으로 타국군함이 영해내까지 해적행위를 추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해적행위가 발생한 연안국가가 해적행위를 한 선박에 추적, 검거, 사법처리 등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니만 연안의 해적퇴치를 위해서는 기니만 연안국가들의 해상안보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해상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가 기니만 연안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나라 해군 퇴역함정을 기니만 연안국가에 양도하는 방안이다. 서구권 국가들은 자신의 오래된 군함을 기니만 연안국가에 많이 양도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2018년 ‘해군 및 방산 홍보 순항단’의 서아프리카 지역 및 대서양 인근 국가 방문을 통해 몇몇 국가들과 이탈리아 해군 중고함정 및 시스템 판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과거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하였던 프랑스에서 많은 퇴역함정을 아프리카에 양도하였고 많은 군함을 아프리카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양도된 퇴역함정을 기니만 연안 국가들은 해상정찰 및 훈련에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권 국가 외에도 중국은 퇴역 군함을 아프리카 국가에 양도하거나 중국에서 제조한 선박을 아프리카에 판매하고 있다. 기니만 국가 중 카메룬 등 5개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오래된 군함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퇴역함정을 아프리카 기니만 연안국가에 양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국방협력을 확대하고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군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군수품을 우방국에 전략적으로 양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아시아 국가에 불용 군수품을 양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중·남미와 아프리카로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양도 품목도 함정⁹²⁾, 항공기, 기동·공병장비에서 화력장비, 탄약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⁹³⁾

<표-18> 군수품 양도 현황

시 기	지 역	양도 품목
1993~1999년	아시아	함정, 항공기, 차량, 장구류 등
2000~2009년	아시아, 남미	함정, 항공기, 공병장비, 기동장비 등
2010년~현재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함정, 공병장비, 기동장비, 화력장비, 상륙장비, 탄약

현재 우리나라 해군은 신형 해군함정을 지속적으로 건조함에 따라 과거에 활약하던 많은 군함을 퇴역시키고 있으며, 이렇게 퇴역한 고속정 및 소형선박(예인정 등)은 대한민국 해군이 유도탄 실사격 훈련시 실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초계함이나 호위함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서울, 울산 등)에 양도하여 해군박물관으로 개조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용방법도 퇴역함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만, 해군력이 약하고 해상안보가 불안한 국가, 특히 해적이 극성을 부리는 기니만 연안국가에 양도함으로써 해적퇴치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니만 일부국가(코트디부아르, 민주콩고공화국)는 <표-19>에

92) 1995·1998·2006년 총 3회 참수리 고속정 8척 필리핀 무상양도, 2000·2002년 참수리 고속정 각 2척 방글라데시 무상양도, 2006년 참수리 고속정 3척 카자흐스탄 양도, 2011년 참수리 고속정 1·3척 가나·동티모르 무상양도, 2014년 초계함(안양함) 콜롬비아 무상양도, 2016년 초계함(경주함) 페루 해안경비대 양도, 2017년 초계함(진주함) 이집트 양도, 2017-18년 초계함 2척(김천, 여수함) 베트남 양도 등의 퇴역함정 타국 양도사례가 있으며, 현재도 퇴역함정의 해외양도가 진행 중이다.

93) 국방부, 앞의 책. 112쪽.

서 볼 수 있듯이 해군병력이 있지만 많은 해군함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작은 연안경비정을 해상경계에 운용하고 있다.

<표-19> 기니만 연안국가 해군과 해양경찰⁹⁴⁾

국 가	병 력	함정척수 (중국양도)	국 가	병 력	함정척수 (중국양도)
세네갈	950	15(0)	나이지리아	17,864	85(0)
감비아	233	7(0)	카메룬	1,250	38(2)
기니바사우	310	2(0)	적도기니	400	13(0)
기니	400	4(0)	가봉	600	30(0)
시에라리온	350	4(1)	콩고공화국	자료없음	11(0)
라이베리아	50	-	민주콩고공화국	6,700	1(1)
코트디부아르	950	8(0)	앙골라	890	30(0)
가나	2,618	27(0)	카보베르데	200	6(1)
토고	260	6(0)	상토메프린시페	자료없음	자료없음
베냉	600	7(2)	-	-	-

94) Jan Grebe, *Ruestung und Militaer in Westafrika*, (Wiesbaden : SpringerVS, 2016), pp.353~355. 와 Stephen Saunders, *IHS Jane' s Fighting Ships(2015~2016)*, (Engelwood : Ihs Global Inc, 2015)의 외국문헌에서 국가별자료를 종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활용가치가 없는 이러한 퇴역함정의 기니만 연안국가 양도는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상안보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⁹⁵⁾. 우리나라 국방부는 해적퇴치를 위한 의미로써의 퇴역함정 양도가 아니라, 아프리카 주요국과 국방분야 협력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퇴역함정을 기니만 연안국가에 양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역함정 양도와 더불어 기니만 연안국가에 대한 해상 대테러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해군 특수전전단 요원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을 수행하는 등 대해적작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해군 특수전전단 요원들이 기니만 연안국가 승조원들의 해상 대테러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 기니만 연안국가까지 가서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퇴역함정 타 국가 양도 시 진행되는 타 국가 승조원 교육과정에 기니만 연안국가는 해상 대테러 교육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해군은 우리나라 퇴역함정을 해외 양도하기 전 퇴역함정을 해군 군수사 정비창(진해)에서 모든 장비가 운용 가능하도록 정비(상가수리, 선체 채도장 등)를 해주고 있으며, 해군 8전투훈련단(진해)에서는 이렇게 정비된 함정을 외국군이 정비(보수과업, 선체도장, 간단한 장비 수리법) 및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절차는 해군의 모항인 진해에서 이루어진다. 기니만 연안국가 승조원들이 진해에서 함정 양도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 진해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 특수전전단이 해상 대테러 교육을 기니만 연안국가 승조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특별히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해군함정 승조원들도 주기적으로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해상 검문검색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해적작전 경험이 많은 해군 특수전전단 요원들이 해상 대테러 및 해상 검문검색방법을 교육시켜줌으로써 기니만 연안국가 승조원들의

95)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에 기니만 연안국가인 가나에 우리나라 고속정 1척을 양도한 경험이 있다.

해적대응능력도 향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승조원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교관으로서 자국 승조원들을 교육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선순환을 통해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적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기니만 연안국가에 우리나라의 퇴역함정을 양도하고, 퇴역함정 양도 교육·훈련 시 해군 특수전전단의 해상 대테러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상안보체계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퇴역함정 양도 및 해상 대테러 교육은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상안보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적선박이 기니만 연안 근처에서 피랍상황 발생 시 기니만 연안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2018년 3월 27일 기니만 인근에서 우리나라 어선 마린 711호가 기니만 해적에게 피랍되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문무대왕함)를 인근해역으로 급파하였다. 그러나 청해부대가 아프리카 동부해안에서 서부해안으로 이동하는데 약 20일이 소요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어선 마린 711호는 피랍 한 달만에 무사히 풀려났지만, 만약에 청해부대가 이동 중에 급박한 발생했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기니만 연안국가에 군사적 도움을 받는 것은 제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해상 대테러 교육받은 승조원이 있고, 우리나라 해군에서 양도받은 함정을 운용하는 나라가 기니만에 있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해당 국가에 적극적인 군사적 행동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쉽게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니만 연안국가에 군사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 국방부가 기니만 연안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니만 연안국가와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국방협력협정의 의의는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 성격의 문서로서, 협력 원칙·분야·방식 등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협력원칙(상호호혜주의 등), 협력 범위(군사정보·군인사 교류, 방산, 군수 등), 행정사항(비용부담, 효력 발생 등) 등 이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미 기니만 국가 중 하나인 앙골라와 2017년 3월 「한·앙골라 국방협력 양해각서」

에 서명하고 군 고위급 교류, 각 군 간 교류,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가봉과도 2011년 10월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표-20>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2018년 11월 기준)⁹⁶⁾

상대국	체결 연월	상대국	체결 연월	상대국	체결 연월	상대국	체결 연월
독일	1994. 5.	스웨덴	2009. 7.	사우디아라비아 (조약)	2013. 2.	우간다	2016. 5.
캐나다	1995. 5.	요르단 (조약)	2009. 10.	인도네시아 (조약)	2013. 10.	에콰도르	2016. 7.
이스라엘	1995. 8.	싱가포르	2009. 12.	필리핀	2013. 10.	보츠와나	2017. 1.
러시아	1996. 11.	리투아니아	2010. 2.	폴란드 (조약)	2013. 10.	피지	2017. 1.
터키	1999. 11.	인도	2010. 9.	아제르바이잔	2013. 12.	이집트	2017. 3.
몽골	1999. 12.	카자흐스탄	2010. 9.	뉴질랜드	2014. 5.	앙골라	2017. 3.
쿠웨이트	2004. 11.	베트남	2010. 10.	카타르 (조약)	2014. 11.	미얀마	2017. 9.
브라질 (조약)	2006. 3.	루마니아	2010. 10.	체코	2015. 2.	캄보디아	2018. 9.
우크라이나	2006. 9.	가봉	2011. 10.	콜롬비아	2015. 3.	브루나이	2018. 9.
UAE (조약)	2006. 11.	페루	2011. 10.	불가리아	2015. 5.	이탈리아 (조약)	2018. 10.
스페인	2006. 12.	호주	2011. 12.	투르크메니스탄	2015. 5.		
우즈베키스탄	2008. 6.	태국	2012. 3.	파라과이	2016. 1.		
일본	2009. 4.	중국	2012. 7.	에티오피아	2016. 5.		

96) 국방부, 앞의 책, 287쪽.

기니만 연안국가와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방부의 정책기조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18년 국방부 국방백서에 “국방부는 향후 아프리카 주요국과 국방분야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기니만 연안국가와 점진적으로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퇴역함정 양도, 해상 대테러 교육지원 등 해상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는 것은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적퇴치를 위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6장 결 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해적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들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적행위는 단순히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에게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무역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전 세계인의 경제 및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적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가장 많은 해적행위가 발생하다 2007년 이후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행위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비군사적/군사적으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행위에 많은 대응하였고, 그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행위는 많이 줄어들었으며, 국제사회의 공조가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서아프리카 해역, 특히 기니만 해역에서는 해적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제적 대응이 소말리아 해역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 기니만 해역의 해적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총82건이 발생하여 최근 10년간 중 가장 많은 해적행위가 발생하였다. 기니만 해역의 해적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말리아 해역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니만 해적에 대해 소말리아 해적처럼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기니만 해역은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해상교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상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국제해상에 위협이 존재하는데 소극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국제해상무역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원유 등 지하자원 수입 및 새로운 수출시장으로써의 잠재가치를 고려 할 때 미래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니만 연안국가들의 해적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향후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간의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적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다른 나라에게 경제협력의 기회를 뺏길 수도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해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초지식인 해적행위의 정의와 전 세계 해적행위 발생현황에 대해 먼저 검토해보았다. 해적행위의 정의는 국제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나 국제기구 마다 상이하며, 관할권내에서 발생한 해적의 사건은 해적행위가 아닌 해상강도행위로 다루고 있으며, 관할권을 영해내 국가가 가지고 있다. 국내법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적행위를 최근 명확히 정의하였으나, 발생한 해적행위는 우리나라 형법 제340조 해상강도죄와 선박위해처벌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해적행위 발생현황에서 최근 10년간의 해적행위 발생현황을 알아봤으며, 지역별, 공격유형별, 인명피해, 선박유형별 해적행위 발생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후 소말리아와 기니만 해역에서 해적행위가 창궐하는 배경과 해적조직의 구조, 해적의 특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두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소말리아와 기니만 해역에서 해적행위가 번성하고 있는 배경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라는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은 해적, 지역주민, 예비조직원, 지역군벌, 이슬람단체 등과 연계되어 고도로 조직화 되어 있었으나, 기니만 해역의 해적은 나이지리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은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범죄조직과의 연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니만 해역의 해적행위는 인질납치와 더불어 유류절도, 신고 되지 않은 해적건수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두 해역에서 번성하는 해적퇴치를 위해서 국제적인 지원과 우리나라의 지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군사적인 대응면에서는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기구 및 타 국가 등에서는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행위에

대해서 군함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기니만 해역의 해적퇴치를 위한 군사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제사회가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적퇴치 능력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군사적 대응은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의 차이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적건수의 가장 큰 차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기니만 해역의 해적퇴치를 위해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민·관·군 차원에서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차원에서는 국내기업의 지역상생을 위한 기니만 지역 투자 활성화이다. 과거 외국 대기업이 지역상생을 무시한 경제투자로 해적창궐의 원인을 제공한 것을 교훈삼아 우리나라 기업은 기니만 연안국가와 지역상생을 할 수 있는 투자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적퇴치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정부차원에서는 국제사회 지원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적행위의 근본문제 중 하나인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도 계속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제기구에서 기니만 해역의 해적퇴치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군 차원에서는 해상안보체계 구축을 검토하였고 특히, 해상전력 및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많은 해군함정들은 명예롭게 임무를 종료하고 퇴역하고 있다. 이러한 퇴역함정을 기니만 연안국가에 양도함으로써 기니만 연안국가 해상안보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니만 연안국가 승조원 대상 해군 특수전전단의 해상 대테러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기니만 해역의 해적퇴치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지원들이 점차 모이고 지속된다면, 현재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행위가 급감한 것처럼 기니만 해역의 해적행위도 차츰 감소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으로써 국제해상운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해적행위의 퇴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위상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국방대학교 PKO 센터, 「소말리아 핸드북」, 2010.

국방부, 「2018 국방백서」, 2019.

국토해양부,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 2011.

김태준, 「테러리즘, 이론과 실제」, 서울 : 도서출판 붕명, 2006.

목진영 외 2명,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방안」,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한국국제협력단, 「2018 KOICA 연보」, 2019.

한·아프리카 재단, 「한 눈에 보는 아프리카 개정판」, 2019.

2. 논문

김도준, “해적퇴치에 관한 법제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김동석, “아프리카 해상안보문제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16-05, 외교안보연구소(2017. 1.).

김동석, “서아프리카 지역 불법어업황들 분석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3, 외교안보연구소(2018. 4.).

김중련,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논문, 2011.

김태준,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소말리아 해적위협을 중심으로” 「교수논총」 제18권 제2호, 국방대학교(2010. 2.).

김현정, “IUU 어업규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국내적 함의”, 「국제법 정책연구」, 국립외교원(2016. 6.).

- 노승재, “소말리아 해적문제의 성격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손태기,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제상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윤현근,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위협과 그 극복방안”, 「교수논총」, 제17권 1호, 국방대학교(2009. 2.).
- 이윤철, “소말리아 해적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부경대 해양법 정책토론회, 2011.
- 이은영, “해적(Piracy)과 동남아 해로안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준호,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를 위한 법제적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조학제, “해군함정의 해외 파견과 국제법적 쟁점 : 해적과 해상테러리즘을 중심으로”, 해군 군사학술용역 연구보고서, 2010.
- 최근하, “해적의 국제 해상운송로 위협과 대응방안 : 소말리아 해적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 보고서

- 해군작전사령부, “국제해적동향 보고서”, 2012.
- 해양수산부, “2013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14.
- 해양수산부, “2014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15.
- 해양수산부, “2018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19.
- 해양수산부, “20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2020.

II. 외국문헌

- Dieter Stockfisch, “Seeraeuber im Golf von Guinea”, *Kameraden, Unabhaengige Zeitschrift fuer alte und junge Soldaten. 59th.*, Arbeitsgemeinschaft fuer Kameradenwerke und Traditionsverbaende., 2014.

Geoinformationsdienst der Bundeswehr, *Geopolitische Information, Geopolitische Analyse Golf von Guinea*, Euskirchen : ZGeoBw, 2015.

Jan Grebe, *Ruestung und Militaer in Westafrika*, Wiesbaden : SpringerVS. 2016.

Moritz Brake(Hrsg.), *Maritime Sicherheit-Moderne Piraterie*, Frankfurt am Main : Peterlang. 2015.

Stephen Saunders, *IHS Jane's Fighting Ships(2015~2016)*, Engelwood : Ihs Global Inc, 2015.

III. 인터넷 참고자료 및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gicomms.go.kr>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KOICA <http://stat.koica.go.kr>
『세계일보』, 2008년 8월 14일자
『법률신문』, 2017년 11월 6일자
『동아일보』, 2019년 7월 3일자
『BBC NEWS』, 2011년 2월 15일자